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매뉴얼

본 매뉴얼은 청소년활동 중 비대면방식이
포함된 경우를 위한 신청 매뉴얼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전반의 사항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신청 매뉴얼’을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CONTENTS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이해

1.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안내 · 6
2.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 9



인증신청서 작성 및 인증기준 이해

1. 인증신청서 작성 · 12
2. 인증기준별 해설 · 15
3. 인증기준별 확인요소 · 18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1. 공통기준 · 30
2. 개별기준 · 122
3. 특별기준 · 138



I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이해

1.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안내
2.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안내

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서의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정의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대면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방식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 <개정 2013. 5. 22.>

제3조(정의)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나. 시간과 장소에 따른 교육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인증수련활동 구분

대 면 방 식	지도자와 참여자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대면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비대면방식	전문지도자와 참여자가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 있으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집 합 활 동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2명 이상 만나서 진행되는 활동
비집합활동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 간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 존재하며 진행되는 활동

운영방식 참여형태	대면 방식 (동일시간)	비대면 방식	
		동일시간	다른시간
집합	- 전통적인 활동 · 야외 모험활동 · 실내 체육활동 등	- 실시간 쌍방향 활동 · 강의실에 집합하여 참여하는 온라인 강의 등	-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중심 활동 · 콘텐츠를 시청하며 조를 구성 하여 참여하는 활동 등
비집합	- 맞춤형 활동 · 1:1 과학교실 등	- 실시간 쌍방향 활동 · 개인 공간에서 각자 참여하는 온라인 강의 등	-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중심 활동 · 개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시청 하며 참여하는 활동 등

다. (통합)기준별 확인요소

○ 활동유형 별 인증기준

활동유형	인증기준
기본형	공통기준 6개(1~6번) * 식사 포함 시 : 개별기준 1개(3번) 추가 제시 *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 시 : 개별기준 2개(4~5번) 제시
숙박형	공통기준 6개(1~6번), 개별기준 3개(1~3번)
이동형	공통기준 6개(1~6번), 개별기준 5개(1~5번)
학교단체 숙박형	공통기준 6개(1~6번), 개별기준 3개(1~3번), 특별기준 1개(특별3번)

○ 비대면방식에 따른 추가기준 작성

구분	인증기준
실시간 쌍방향	각 활동유형별 인증기준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기준
콘텐츠 활용 중심	각 활동유형별 인증기준 +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중심 기준
과제수행 중심	각 활동유형별 인증기준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기준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이해

비대면방식의 활동 구분

구분	내용
실시간 쌍방향	실시간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활동으로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즉각적 피드백 진행
콘텐츠 활용 중심	청소년은 지정된 녹화 강의 또는 사전 제작된 콘텐츠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도자는 활동의 진행도 확인 및 사후 피드백 진행
과제수행 중심	지도자는 발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 및 사후 피드백 진행

○ 작성방법

-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를 (통합) 비대면방식 인증신청 양식(한글파일)에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 ◇ 비대면방식 인증신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완료한 후 담당자에게 한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 인증기준 영역구분 :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으로 구성
 - 공통기준 :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 개별기준 : 숙박·식사, 프로그램 이동
 - 특별기준 : 위험도가 높은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비대면방식 실시간쌍방향,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중심,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국내청소년활동			
구분	영역/유형	인증기준	확인요소
공통기준	활동프로그램	2	9
	지도자	2	8
	활동환경	2	7
개별기준	숙박형	3	5
	이동형	5	7
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학교단체 숙박형	1	3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1	5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1	6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1	5
국제청소년활동			
구분	영역/유형	인증기준(국내/해외)	확인요소(국내/해외)
공통기준	활동프로그램	2/2	11/11
	지도자	2/2	9/9
	활동환경	2/2	7/8
개별기준	숙박형	3/2	5/3
	이동형	5/4	7/5
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2	4
	학교단체 숙박형	1	3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이해

※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인증기준 구성

구분	영역/유형	기준
공통기준	활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구성 2. 프로그램 자원운영
	지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지도자 자격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활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6. 안전관리 계획
개별기준	숙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박관리 2. 안전 관리인력 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이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박관리 2. 안전 관리인력 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이동관리 5. 휴식관리
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지도자 배치 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학교단체 숙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II.

인증신청서 작성 및 인증기준 이해

1. 인증신청서 작성
2. 인증기준별 해설
3. 인증기준별 확인요소



1

인증신청서 작성

1 인증신청서 내용

■ 신청기관정보

사용자 아이디			
대표자명	이광호	사업자등록번호	1068214832
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유형	공공기관
기관주소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충정로2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5층		
기관전화번호	02-330-2800	기관팩스번호	02-6430-0927
기관홈페이지	http://kywa.or.kr	이메일	test@daum.net

■ 운영담당자 ?

[▶ 운영담당자수정](#) [▶ 운영담당자등록](#)

운영담당자를 등록해 주세요.

■ 신청내용

* 활동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 프로그램 일정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정유형</td> <td> <input type="radio"/> 기본형-당일 <input type="radio"/> 기본형-회기 <input type="radio"/> 숙박형 <input type="radio"/> 숙박형-회기 <input type="radio"/> 이동형 <input type="radio"/> 학교단체 숙박형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일정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td> </tr> </table>	일정유형	<input type="radio"/> 기본형-당일 <input type="radio"/> 기본형-회기 <input type="radio"/> 숙박형 <input type="radio"/> 숙박형-회기 <input type="radio"/> 이동형 <input type="radio"/> 학교단체 숙박형		일정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정유형	<input type="radio"/> 기본형-당일 <input type="radio"/> 기본형-회기 <input type="radio"/> 숙박형 <input type="radio"/> 숙박형-회기 <input type="radio"/> 이동형 <input type="radio"/> 학교단체 숙박형				
	일정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컨소시엄 ?	<input type="radio"/> Y <input checked="" type="radio"/> N				
* 참가자 모집방법 ?	<input type="checkbox"/> 개별모집 <input type="checkbox"/> 학교연계모집				
* 활동영역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 활동영역찾기				
* 특별기준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 포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운영방식	<input type="checkbox"/> 대면 방식 활동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방식 활동 <input type="checkbox"/> 대면 + 비대면 방식 활동				
* 국제활동 유무	아니오 ▼				
* 인증신청 마감일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선택 ▼ 본 인증신청 결과는 마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게시판 - 심의결과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활동 예정일	인증신청일(현재일)로부터 45일 후 실시가능합니다				

*대상 ?	참가자연령대	만 9~12세 (초등학교)	만 13~15세 (중학교)	만 16~18세 (고등학교)	만 19~24세	기타(가족)	합계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인증 유효기간	신청프로그램이 인증될 경우 유효기간은 (<input type="checkbox"/> 선택)을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40px;"></div>						
*주요활동장소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20px;"></div>						
간편인증신청 적용여부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① (우수 수련시설이 해당 시설에서 활동)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이상 시설이 해당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② (기인중 활동장 사용) 청소년수련시설이 기존에 인증받은 활동의 활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 수련시설이 보유한 시설만 가능하며, 2018년 2월 이후 인증건부터 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③ (우수 수련시설을 활동장으로 사용)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이상 시설을 활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④ (학교 활동장 사용) 학교를 활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⑤ 해당없음						
*비용	참가비 (0%)			자부담 (0%)	후원 (0%)	기타 (0%)	합계
	1인당	계수인원	전체				
	0 원	0 명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프로그램 안내 사진 첨부파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파일을 선택하세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파일을 선택하세요</div>			

입저장

2 인증신청서 기재방법

① **신청기관정보** : 기관의 정보는 최초 시설단체 등록 시 기입된 정보로 자동 불러옴

* 인증신청서 접수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② **운영담당자** : 운영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지도할 책임자를 말함

*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를 선택해야함. 지도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 운영담당자수정

선택 후 등록, 지도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 운영담당자등록

선택

③ **활동명** : 활동명은 최대한 한글로 작성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 사용 시, 한글 제목 작성 후 영문으로 표기함

④ **프로그램 일정** : 활동이 운영되는 일정 및 활동유형을 선택

* 비대면방식으로만 운영되는 활동이라면 '기본형'-회기로 선택하여 일자 지정

* 식사를 포함하는 활동이라면 '식사포함' 선택, 이동에 목적이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동포함' 선택

⑤ **컨소시엄** : 프로그램 운영을 2개 이상 기관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형태

⑥ **참가자 모집방법**

- 개별모집 : 참가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형태

- 학교연계모집 : 학교와 연계하여 모집하는 형태

⑦ **활동영역** : 9개 활동영역 중 주된 활동영역을 선택하여 기재

⑧ **특별기준 적용여부** : 참여청소년이 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일 경우 해당 내용 선택

⑨ **운영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대면+비대면의 운영하는 방식

⑩ **국제활동 유무**

- 국내 :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

- 해외 :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

⑪ **대상** : 참가자 연령대(교급)에 맞는 인원 기재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도 활동인원에 포함하여 기재

⑫ **인증 유효기간** : 4년 이내로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 유효기간 설정

⑬ **주요내용** : 주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⑭ **주요활동장소** : 활동이 운영되는 주요 활동장소 기재

* 이동형의 경우 이동의 시작점과 도착점을 작성

⑮ **간편인증신청** : 간편인증신청 대상이라면 신청하려는 종류를 선택

⑯ **비용** :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을 기재

⑰ **프로그램 사진** : 주요 프로그램 운영사진을 첨부하고, 없을 시 이해를 돕는 사진을 첨부(프로그램 대표사진으로 노출됨)

기준	설명
공통 1. 프로그램 구성	인증수련활동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정, 평가계획이 참여청소년의 발달특성, 목적 및 목표,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평가계획이 추진배경과 연관되어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대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통 2. 프로그램 자원운영	프로그램 자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물적 자원(기자재 등)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확보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게 수립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공통 3. 지도자 자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양질의 활동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지도자의 전문성은 자격사항과 해당 분야의 교육 및 훈련 등의 요소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춘 지도자가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공통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프로그램과 참여자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지도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활동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의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통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활동장의 물리적 조건은 프로그램 내용을 실현하는 데 방해요소가 없고 사용이 편리 하면서 활동성고를 높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확보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참여 청소년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인증신청자는 활동장소의 공간, 시설물,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통 6. 안전관리 계획	청소년활동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활동과정 안전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활동과정에 참여한 청소년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해자 발생 시 현장에서부터 적합한 대응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동환경과 프로그램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준	설명
개별 1. 숙박관리	숙박공간은 활동 참여청소년의 인원을 고려하여 개인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의 역할을 명시한 철저한 숙박관리 계획으로 참여청소년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개별 2. 안전 관리인력 확보	활동장에는 일반적인 점검과 주의 외에도 시설물 유지 및 이용자의 기본적 생활편의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의 특성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활동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관리 운영할 유자격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 3. 영양관리자 자격	청소년기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발한 신체활동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하며, 사춘기의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영양공급을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양관리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계획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등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개별 4. 이동관리	이동이란 국토대장정과 같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각각의 활동장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동형의 인증수련활동은 참여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준 또는 지침, 규정, 운영 매뉴얼 등의 형태로 합리적인 이동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5. 휴식관리	청소년들의 활동 과정상 몰입은 개인의 발달 및 활동과정 운영에 다소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적절한 휴식 없이 무리하게 활동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활동과정 전반에 참여 청소년들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계획 및 일정표에 반영하고, 참여 지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 (위험도가 높은 활동) 전문지도자의배치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프로그램과 참여자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지도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활동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의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	설명
<p>특별. (위험도가 높은 활동) 공간과 설비의 법령준수</p>	<p>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6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신청자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인증 신청자(기관)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 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활동안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특별.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관리</p>	<p>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은 학교와 계약하여 이루어지는 특강상 프로그램 내용의 교체 요구가 많고 참여청소년이 주로 한 개의 장소에서 숙박과 식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하고 숙박과 식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관리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와 생산물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특별.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p>	<p>실시간 쌍방향 활동은 실시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도자가 비대면방식으로 쌍방향 소통 및 즉각적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활동을 말한다. 원활한 활동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여부와 피드백의 방법, 온라인 상의 보안사항 준수여부 확인계획을 확인해야 한다.</p>
<p>특별.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p>	<p>콘텐츠 중심 활동은 청소년이 지정된 녹화 강의 또는 사전 제작된 콘텐츠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도자는 비대면방식으로 활동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활한 활동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콘텐츠 사용에 따른 확보계획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여부와 피드백의 방법, 온라인 상의 보안사항 준수여부와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p>
<p>특별.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p>	<p>과제수행 중심 활동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비대면방식으로 과제 제시 및 사후 피드백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활한 활동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공간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여부와 피드백의 방법, 온라인 상의 보안사항 준수여부 확인계획을 확인해야 한다.</p>

3

인증기준별 확인요소

가.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인증 기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프로그램 구성	1-1 참여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1-2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에는 청 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1-3 프로그램의 일정은 입·퇴소를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제시 되어 있다.	좌동	좌동
	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유지·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1-5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좌동	좌동

인증 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6 프로그램 환류계획이 수립 되어 있다.	좌동	좌동
	1-7 프로그램 평가계획과 평가 도구가 증빙되어 있다.	좌동	좌동
	-	1-8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좌동
2. 프로그램 자원운영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 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 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 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 담만 내역 명시)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 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 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 담만 내역 명시)
	2-2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	2-3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	좌동

2) 지도력

인증 기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3. 지도자 자격	3-1 규정 제26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인증신청 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2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3-4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3-5 지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예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좌동	좌동

인증 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3. 지도자 자격	-	3-6 지도자 중 해외활동 유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	좌동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4-1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좌동	좌동
	4-2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9-1]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은 [별표 9-2]의 배치규정을 따른다.	좌동	좌동
	4-3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 하여 복수의 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와 협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4-3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 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 우 역할 분담정도를 확 인할 수 있다.	좌동

3) 활동환경

인증 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5-1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단,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는 경우 공간과 설비의 확보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좌동	좌동
	5-2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좌동	5-2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단, 사진 및 홍보자료로 증빙 가능)
6. 안전관리 계획	6-1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사전안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단,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지 않는 경우 법적보호자의 교육 등 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6-2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가 계획되어 있다.	좌동	좌동

인증 기준	확인 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6. 안전관리 계획	6-3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사고대책과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6-4 제37조의2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좌동	좌동
	6-5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 (협업 또는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운영기관 모두) 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대인 8천만원 이상, 대물 2백만원 이상)	좌동	좌동
	-	-	6-6 방문국의 국정이 불안한 상황(전쟁, 질병, 분쟁 등) 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국과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개별기준

인증 기준	확인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숙박 관리	개별1-1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좌동	좌동
	개별1-2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안전관리 인력확보	개별2-1 참여청소년의 숙박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 영양관리자 자격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식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3-2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4. 이동관리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좌동	개별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 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단, 이동계획 및 이동 수단 명시)

인증 기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5. 휴식 관리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별5-1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좌동	개별5-1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해외주관 프로그램 경우 탄력적 적용)

다. 특별기준

1) 위험도가 높은 활동

인증 기준	확인 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전문 지도자의 배치	특별1-1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별표 9-2]의 배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특별2-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좌동	좌동
	특별2-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 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좌동	좌동
	특별2-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좌동	좌동

2) 학교단체 숙박형

인증 기준	확인 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특별1-1 중요프로그램(규칙 제15조8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외한 전체 운영 시간의 5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인증 기준	확인 요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특별1-2 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기관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좌동
	특별1-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숙소와 식단이 관리되고 있다.	좌동	좌동

3)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인증기준	확인 요소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특별 1-1 실시간 쌍방향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 1-2 실시간 쌍방향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별 1-3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
	특별 1-4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5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4)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인증기준	확인요소
1.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특별 1-1 콘텐츠 제작물 또는 확보계획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2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별 1-3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한 윤리성, 저작권, 무결성, 콘텐츠 설계 및 구성, 콘텐츠 내용,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4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사용된 콘텐츠의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특별 1-5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6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5)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인증기준	확인요소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특별 1-1 과제수행 중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 1-2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별 1-3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4 과제수행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5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1-6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1. 공통기준
2. 개별기준
3. 특별기준



1

공통기준

1 (통합)공통기준1 프로그램구성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1-1 참여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A
1-2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 있다.	1-B 1-C
1-3 프로그램의 일정은 입·퇴소를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별 학단 1-1 중요프로그램(규칙 제15조8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외한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실시간 1-2 실시간 쌍방향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별 콘텐츠 1-2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특별 과제 1-2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1-D 1-E
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유지·기술되어 있다. 2-2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4-2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9-1] 또는 [별표 9-2]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5-1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단,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는 경우 공간과 설비의 확보계획이 제시되어있다) 특별 실시간 1-4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콘텐츠 1-5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F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과제 1-3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F
특별 과제 1-4 과제수행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5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1-G
1-6 프로그램 환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H
1-7 프로그램 평가계획과 평가도구가 증빙되어 있다.	1-I 1-J

학단 : 학교단체 숙박형 유형에만 적용

실시간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만 적용

콘텐츠 :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동 중심 활동에만 적용

과제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활동에만 적용

가. (통합)1-A 참여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이 참여청소년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1) 확인요소

- 참여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이 아닌 어떤 대상인지 명확하도록 기술
 - 대상 집단의 원하는 욕구 또는 문제점, 상황이 설명되어야 함
 - 본 활동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
 - 본 활동의 전체 지향점을 설명해야 함

○ 기사, 논문, 통계 등 객관적 근거가 1개 이상 제시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배경을 기술할 때에는 논문이나 기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발달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필요성 작성을 권장
- 출처는 표기법에 맞춰 작성

출처 작성법

- ◇ 책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 ◇ 논문 : 저자, 논문명, 논문이 실린 책 이름(잡지명), 통권, 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 ◇ 신문기사 :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기재된 면
- ◇ 인터넷 기사 : 기사 제목, 매체 이름, 작성 일시,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
- ◇ 통계(설문조사 결과) : 설문 진행자(연구기관), 발표일, 설문 주제(제목), 인용한 사이트나 도서명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통합)공동1-A.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내용	<p>○ 개인의 심화와 야외체험활동 기회가 저하되는 중학교 청소년들</p> <p>-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소에서 2015년 12월 29일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문에 중학생의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2013년의 같은 질문에는 27%의 중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소장 안중배 한세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왜곡된 자본주의에 매몰돼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라고 설명하였다.(1)</p> <p>-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및 체험기회가 부족(특히, 현장견학, 봉사활동,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학생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와 학교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2)</p> <p>○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3)</p> <p>- 김소희(2007)에 의하면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생활효과성(팀협력)에서 참여전보다 참여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연권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 경험은 다른사람과의 관계등 외적응심통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자연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 필요성</p> <p>- 자연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은 그 특성상 다른 참여자들과의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고 도시생활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성 및 협조성을 높일 수 있고, 도전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야외체험활동 기회가 부족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모험심을 함양시켜 전인적 성장을 돕도록 하고자 한다.</p>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교생 56% "10억 생킨다면 죄짓고 감옥 가도 괜찮아"; 『한겨레신문』, 2015.12.12.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제2차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자 연수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pp. 7. 3. 김소희(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A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나. (통합)1-B, (통합)1-C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수련활동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목적은 추진배경 혹은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다.
 - 목적의 기술에는 '상황, 대상, 내용, 의도' 등의 4가지 요소를 포함
 - 예) '어떠한 상황에 있는 OO를 대상으로 무엇을 제공하여 어떻게 되게 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의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목적 및 목표 기술방법

◇ 목적의 기술방법

- 상황 : 개인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야외 체험활동 기회가 저하되는
- 대상 :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 내용 : 스포츠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 의도 : 모험심을 함양 시키고자 함

◇ 목표의 기술방법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달성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통합)공통1-B. 프로그램 목적

내용	개인주의 현상의 심화와 야외 체험활동 기회가 저하되고 있는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에서의 수련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모험심을 함양 시키고자 한다.
----	-----------------------------------------------------------------------------------------

■ (통합)공통1-C. 프로그램 목표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미션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여 참여자간 단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장비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전해보는 마음을 기른다. 3. 협력과 도전정신이 필요한 종합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모험심을 프로그램 참가전보다 향상시킨다.
----	-----------------------------------------------------------------------------------------------------------------------------------------------------------------------------------------------------------------------------------------------------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B 프로그램 목적

-
-

(통합)1-C 프로그램 목표

-
-

다. (통합)1-D, (통합)1-E 프로그램의 일정은 입·퇴소를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 프로그램 계획 및 일정이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고,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사전 준비사항 안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개요에는 기간, 장소, 참여대상 및 인원이 제시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일정은 입·퇴소를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 오리엔테이션과 마무리 시간은 처음과 끝의 단위프로그램 계획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식사, 휴식, (장소)이동, 취침 등의 구분이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다.
 - ※ 일정표에서 활동의 시작은 반드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활동시작)이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전에 운영되는 사항은 인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일정표에는 소요시간은 운영과 (자체)활동 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운영 : 기관에서 실시간 쌍방향 또는 콘텐츠 등 제공하는 시간
 - (자체)활동 : 청소년이 운영 시간 외에 필요로 하는 시간
 - ※ (장소)이동 : A수련원에서 B수련원으로 이동하는 등 기관 간의 이동을 의미함.
 - A수련원 강당에서 A수련원의 챌린지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장소)이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6에 따라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규모(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학단**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의 경우 활동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중요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식사와 휴식 등 제외) 중 50%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 비대면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청소년대상 사전 안내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활동의 경우 지도자의 사전 여행연습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유형별 유의사항

◇ 기본형 당일 활동

- 식사, 휴식, 이동시간을 제외한 3시간 이상으로 구성 (다만,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참가를 승인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교급별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기본형 활동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기준3번 추가 작성
- 기본형 활동 중 (프로그램)이동이 있는 경우 개별기준4,5번 추가 작성
 - ※ (프로그램)이동 :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일정 중에서 이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 기본형 2회기 이상 활동

- 식사, 휴식,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이상으로서 1일 1시간 이상의 회기로 구성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참가를 승인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교급별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기본형 프로그램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개별기준3번 문서 추가 증빙
- 기본형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이동이 있는 경우 개별기준4,5번 문서 추가 증빙
 - ※ (프로그램)이동 :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일정 중에서 이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 이동형 활동

- (프로그램)이동을 일정표에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표시

학교단체 숙박형 인증신청 및 운영 시 필수 확인사항

◇ 중요프로그램의 지정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은 식사와 휴식 등을 제외한 전체 운영시간 중 50% 이상을 활동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중요프로그램으로 지정해야 함
 - ※ 중요프로그램으로 지정한 활동이 활동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경우 불인증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학교단체 숙박형의 탄력적 운영방법

- 중요프로그램을 제외한 개별단위프로그램을 인증받은 개별단위프로그램으로 변경신청 없이 운영가능 (단, 인증수련활동 실시일자 통보 시 활용하려는 개별단위프로그램을 통보해야 함)
 - ※ 개별단위프로그램 인증은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총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개별단위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단축·제외하거나 또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학교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 학교주관 프로그램 : 학교의 교사가 직접 운영 하는 프로그램

◇ 중요프로그램 유의사항

- 중요프로그램은 변경(학교 주관 프로그램 포함), 삭제가 불가함 (활동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서변경만 가능)
- 중요프로그램은 위탁이 절대 불가능함 (중요프로그램을 위탁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통합)1-D 프로그램 개요

- 운영시간 : 180분(최소 활동시간은 180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운영방식 : 실시간 쌍방향 활동,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과제 수행 중심 활동
- 참여대상 : 만 9~12세(초등학교)
- 인원 : 10명
- 기자재 제공방법
 - 제공기간 : 활동 시작 7일 전까지
 - 제공장소 : 기관 로비
 - 수령방법 : 참가자가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활동 사전 안내방법
 - 안내기간 : 활동 시작 3일 전
 - 안내방법 : 참가자 메일로 사전안내자료 발송(일정, 참가자준비물품, 접속방법 등)
- 예행연습 계획
 - 기간 : 활동 시작 1일 전
 - 내용 : 화면공유, 소규모회의실 구성, 참가자 마이크설정 등

(통합)1-E 프로그램 일정표

순서	운영방식	소요시간		집합여부	단위프로그램명
		운영	(자체) 활동		
1	실시간쌍방향	15분	-	비집합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콘텐츠	15분	30분	비집합	
	과제제출	-	60분	비집합	
2	콘텐츠	15분	-	비집합	
	과제제출	-	30분	비집합	
	콘텐츠	5분	-	비집합	평가 및 마무리

<작성양식>

(통합)1-D 프로그램 개요

- 운영시간 : 분
- 운영방식 : 실시간 쌍방향 활동,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과제 수행 중심 활동 중 선택
- 참여대상 :
- 인 원 :
- 기자재 제공방법
 - 제공기간 :
 - 제공장소 :
 - 수령방법 :
- 활동 사전 안내방법
 - 안내기간 :
 - 안내방법 :
- 여행연습 계획(실시간쌍방향 방식을 활용 할 때에만 작성)
 - 기간 :
 - 내용 :

(통합)1-E 프로그램 일정표

순서	운영방식	소요시간		집합여부	단위프로그램명
		운영	(자체) 활동		



라. (통합)1-F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을 유지 기술되어 있다.

⇒ 개별단위프로그램 내용에는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개별단위프로그램명, 개별단위프로그램 목표, 활동인원, 지도자 전문성, 지도인원, 유의사항, 활동장비, 활동내용, 활동장소, 활동장 크기 등) 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단위프로그램 내용에서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리엔테이션부터 마무리까지 일정표에 시간대별로 제시된 각 단위프로그램 계획서가 등록되어야 함 (*일정표에 등록된 식사, 취침, 휴식, (장소)이동, 기타 일정은 제외)
 - 단위프로그램 내용에는 단위프로그램명, 단위프로그램 목표, 활동인원, 전문 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지도인원, 유의사항, 활동장비(기자재), 활동내용(도입, 전개, 마무리), 활동장소, 활동장 크기 등이 기술되어야 함
 - 단위프로그램명 :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와 의미를 함축한 프로그램명 설정
 - 단위프로그램 목표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며 전체 활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과 연관된 내용으로 작성
 - 활동인원 : 같은 시간대에 해당 단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작성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지도 시 활동단계 및 활동환경 등을 고려한 유의사항 작성
 - 활동내용(도입, 전개, 마무리) :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제가 어떠한 형태와 지도방법으로 전개되는지 상세하게 작성
 - 단위프로그램 내용이 전체 활동목적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은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더라도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 단순 주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활동이 가진 의미와 활용하는 기자재, 프로그램의 지도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
 - 안전교육의 경우 반드시 첫번째 단위프로그램(예:오리엔테이션)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등 활동 일정 중 지도계획에 참여 청소년 대상 활동기록 발급 안내를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활동장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단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활동 물품)가 모두 기술되어야 함
 - 활동장비 : 단위프로그램 내용에서 활용계획을 작성한 모든 활동물품의 내역 (품목, 수량, 확보형태)을 작성

· 활동장비(상세) : 사용권장연령을 확인하여 kit제공 시 구성품 사진 또는 품목을 모두 작성

-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의 경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데 필요한 활동물품을 작성
-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안전고려활동의 경우 안전체크리스트에서 갖추어야 하는 활동장비(기자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청소년이 직접준비하는 경우 '개인지참', 수량은 청소년이 준비해야하는 수량 작성
- ※ 기관에서 준비하는 경우 '기관제공(구입or보유or 대여)' 구분하여 작성, 수량은 기관에서 준비하는 수량을 작성
- 사용 기자재가 임대나 구입일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공통2번)에 해당 비용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기자재 수량은 참여청소년의 수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소량의 기자재를 다수의 청소년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계획서에 활용 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환경을 고려하여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수준이 기술되어야 함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 : 해당 단위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전문 지도자(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도자)의 전문성(경력 혹은 자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기관을 작성
- ※ 지도자 전문성 수준을 경력으로 제시할 시 발급기관을 통칭하여 해당기관장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자격 사항은 반드시 정확한 자격명과 발급기관명을 작성하여야 함
- ※ 1명의 지도자가 2개 이상의 전문성 수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전문성 중 일부만 충족한 지도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양식에 따라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 자격을 확보하여야 함
- ※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전문성 수준 외 일반적인 활동은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자격이 없다면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지도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그 외 전문성 수준은 인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가능

· **활동관리 : 참여청소년 관리(출결, 접속상태 확인 등),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시간 대화(댓글 등)를 통한 소통 및 내용 숙지 확인, 문제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정보통신 윤리 저해 행위 발생 시 조치 등**

※ 비대면방식 실시간쌍방향 활동의 경우 외부요인으로 인해 참가자의 실시간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처계획(사후 콘텐츠 제공 등) 작성 필요

○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활동내용과 활동환경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다.**

- 참여인원, 활동환경(실내, 실외, 야외),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지도자 배치규정(인증제 운영규정 별표9-1)에 따라 활동장소별 최소 2명 이상의 지도자 배치

- **비대면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활동관리 인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 관리**

※ 비대면방식 집합활동의 경우 지도자배치규정(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9-1)에 따라 배치

※ 다만 참여자 중 성인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경우(예: 가족프로그램) 해당 참여자를 활동관리 지도자로 포함 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활동 또는 활동 특성에 따라 직접 참여인원과 대기 인원이 구분될 경우 직접 참여인원과 대기인원에 따라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도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배치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지도인원 : 활동인원에 따라 배치되는 전문 지도자와 보조 지도자 인원 수 작성

○ **활동장소와 세부활동장은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단위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모든 활동장의 활동장소명과 세부 활동 장소명 기술

- 세부활동장소의 실내·실외·야외 구분과 활동장 크기를 기술 (수용규모가 아닌 넓이(m²)로 기술)

· 활동장소/세부활동장 : 활동장의 확보형태(보유·위탁·임차·예약·개방)와 세부 활동장소 유형(실내·실외·야외), 면적을 작성하며 활동환경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동장 사진을 등록

※ 야외 활동장 중 활동장 면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규모로 제시 가능

- **비대면방식 집합활동의 경우 집합장소 정보를 제시**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의 경우, 참가자의 참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내용 or 활동관리에 기재)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활동의 경우에는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1-F 작성 시 유의사항

-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은 운영 특성 상 운영의 흐름과 운영방식을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 ◇ **단위프로그램 계획서(통합1-F)는 작성양식에 다수의 인증기준 확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위프로그램 계획서 등록이 누락되거나 운영내용의 오기가 있을 경우 불인증으로 심의될 수 있으니 단위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시간대에 조별로 나뉘는 활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별로 단위프로그램 계획서가 별도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조별로 나뉘어 활동이 운영되는 경우 (이 경우 활동내용에 조별 구분 방법 등과 활동내용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그 밖에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술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용어해설

활동장비(기자재) : 개인지참, 기관제공(보유·임차·구입)

개인지참	참가자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
보유	인증신청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임대	활동운영 장비를 다른 기관 혹은 업체로부터 빌리는 것 (공통2번의 예산산출내역에 임대비 작성) ※ 단, 무상임대일 경우 1-F 내 무상임대 내용을 기술
구입	활동운영 장비를 구입하는 것 (인증신청 단계에서는 장비가 없지만 운영시점에서는 있어야 함)

활동장 소유 구분 : 직영·수탁·임차·예약·공유지

직영	인증신청기관이 활동장을 보유하고 있음
수탁	인증신청기관이 활동장을 다른 단체·기관·개인으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경우
임차	인증신청기관이 활동장을 다른 단체·기관·개인으로부터 장기간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예약에 비해 장기간 사용
예약	인증신청기관이 활동장을 다른 단체·기관·개인으로부터 단기간으로 빌려서 사용할 계획인 경우 ※ 임차에 비해 단기간 사용
공유지	별도의 특별한 예약행위 없이 상시적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곳일 경우

세부활동장 구분 : 실내·실외·야외

실내	집 또는 건물의 안, 지붕 혹은 벽이 있는 장소
실외	인증활동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변 (수련시설의 운동장, 체험장 내 영농체험장 등)
야외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노천.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을 가입하는 활동 공간 (공원, 하천, 사적지, 시장 등)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 기술방법

◇ 전문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증빙은 단위프로그램별 전문성 수준의 계획으로 제시

- 따라서 전문지도자의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을 인증신청 단계에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증 후 이행여부 확인 시에는 해당 활동 지도자의 전문성 관련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에서는 전문성 관련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 기술방법

- 해당 단위프로그램에 기술한 전문성 수준이 모두 포함되는 지도자의 경우 전문성 수준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활동 경력 1년 이상의 지도자)

	전문성 수준	발급기관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상구조사	00해양경찰서
	해당활동 경력 1년 이상	해당기관장

- 전문성 수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경우 같은 칸에 해당 전문성 수준과 발급기관 기술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활동 경력 3년 이상의 지도자)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	발급기관
전문성	수상구조사 또는 해당활동 경력 1년이상	00해양경찰서, 해당기관장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 기술 시 유의사항

- 모든 활동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포괄적으로 '청소년활동경력' 으로 기술할 경우 인증기준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만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활동 경력만 있을 경우, 모든 수련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에 통용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을 경력자로 계획할 경우 발급기관은 '해당기관장'으로 기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지도자 전문성을 자격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전문지도자 전문성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과정 참여 (청소년: 지도자)	사전교육 · 교육대비	지도자 전문성 수준
수상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3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중형 체험활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 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2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단, 인명구조요원 1명 이상 포함
	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과정 참여 (청소년: 지도자)	사전교육 · 교육대기	지도자 전문성 수준
수상활동	내수면의 래프팅 활동	래프팅 보트당 1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활동	2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생활스포츠 지도사(수영)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4시간 이상 야간 산행	15:1	30:1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3년 이상 해당 활동 지도 경력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해당 분야 유자격자 배치 ※ 항공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지도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장거리 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1:1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실내	실외	야외	지도자 자격	비고
30:1	30:1	15:1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지도자 최소 1명 이상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소년수가 30명 초과 시, 매20명 단위로 지도자 1명씩 추가 배치 ※ 실내프로그램 제외 ○ 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인증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은 배치 지도자 수의 50%를 축소하여 배치가능 ○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 배치, 다만 프로그램이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지 않는 경우 지도자 수는 배치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2명으로 배치 가능

- * 실내 : 집 또는 건물의 안, 지붕 혹은 벽이 있는 장소 (예 : 강의실, 체험관 등 실내집회장)
- * 실외 : 인증활동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변으로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 (예 : 수련시설의 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체험장 내 영농체험장 등)
- * 야외 :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노천을 칭함.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장소(예 : 공원, 하천, 사적지, 유적지, 시장 등)

※ 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경우라도 수상·수중 혹은 연안에서 운영되는 활동은 별표 9-2의 수상활동, 스키장에서 운영되는 스키활동은 별표 9-2의 산악 활동 배치비율을 준용함

활동유형에 따른 참여 청소년 인원별 지도자 배치표

◇ 비대면방식 활동

- 집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일반활동과 지도자 배치 동일
- 집합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활동관리 지도자 최소 2명 이상 배치

◇ 일반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아닌 경우)

- 장소별 필요 지도자 수 : 전문·보조지도자 및 (안전)전문인력을 합한 수, 다만 최소 1인은 전문지도자로 구성
-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작 시간의 입소식과 마무리의 퇴소식에는 필요 지도자의 50%까지 축소하여 배치 가능 (단, 지도자는 최소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수련시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참여 청소년 대비 지도자 배치비율 50%까지 축소하여 배치 가능 (단, 지도자는 최소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인증신청 시에는 기존 지도자 배치표에 따른 인원수를 기재하나, 실제 운영 시에는 축소하여 운영)

실내활동		실외활동		야외활동	
활동인원	지도자 수	활동인원	지도자 수	활동인원	지도자 수
1~30	2	1~30	2	1~15	2
31~60	2	31~50	2	16~30	2
61~90	3	51~70	3	31~50	3
91~120	4	71~90	4	51~70	4
121~150	5	91~110	5	71~90	5
151~180	6	111~130	6	91~110	6
181~210	7	131~150	7	111~130	7
211~240	8	151~170	8	131~150	8
241~270	9	171~190	9	151~170	9
271~300	10	191~210	10	171~190	10
301~330	11	211~230	11	191~210	11
331~360	12	231~250	12	211~230	12
361~390	13	251~270	13	231~250	13
391~420	14	271~290	14	251~270	14
421~450	15	291~310	15	271~290	15
:	:	:	:	:	: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 스쿠버다이빙 및 스킨다이빙 활동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5: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모두 전문지도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문지도자 수 (모두 해당되는 활동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1~5	2
6~10	2
11~15	3
16~20	4
21~25	5
26~30	6
31~35	7
36~40	8
41~45	9
46~50	10
51~55	11
56~60	12
61~65	13
66~70	14
71~75	15
76~80	16
81~85	17
86~90	18
91~95	19
:	:

◇ 해수면의 수상에서 운영되는 활동

- 고무보트(노보트),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수중스쿠터,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조정, 카약, 카누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10: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각 활동에서 요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10	2	1	101~110	11	4
11~20	2	1	111~120	12	4
21~30	3	1	121~130	13	5
31~40	4	2	131~140	14	5
41~50	5	2	141~150	15	5
51~60	6	2	151~160	16	6
61~70	7	3	161~170	17	6
71~80	8	3	171~180	18	6
81~90	9	3	181~190	19	7
91~100	10	4	:	:	:

◇ 내수면의 수상에서 운영되는 래프팅 활동

- 래프팅 보트 당 1명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배치

◇ 내수면의 수상에서 운영되는 활동

- 고무보트(노보트),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수중스쿠터,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조정, 카약, 카누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15: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각 활동에서 요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15	2	1	151~165	11	4
16~30	2	1	166~180	12	4
31~45	3	1	181~195	13	5
46~60	4	2	196~210	14	5
61~75	5	2	211~225	15	5
76~90	6	2	226~240	16	6
91~105	7	3	241~255	17	6
106~120	8	3	256~270	18	6
121~135	9	3	271~285	19	7
136~150	10	4	:	:	:

◇ 수상과 수증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갯벌 등)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20: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이 중 최소 1인 이상 인명구조요원 유자격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20	2	1	201~220	11	1
21~40	2	1	221~240	12	1
41~60	3	1	241~260	13	1
61~80	4	1	261~280	14	1
81~100	5	1	281~300	15	1
101~120	6	1	301~320	16	1
121~140	7	1	321~340	17	1
141~160	8	1	341~360	18	1
161~180	9	1	361~380	19	1
181~200	10	1	:	:	: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활동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20: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영 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20	2	1	201~220	11	4
21~40	2	1	221~240	12	4
41~60	3	1	241~260	13	5
61~80	4	2	261~280	14	5
81~100	5	2	281~300	15	5
101~120	6	2	301~320	16	6
121~140	7	3	321~340	17	6
141~160	8	3	341~360	18	6
161~180	9	3	361~380	19	7
181~200	10	4	:	:	:

◇ 항공활동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과 1: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이 중 3:1의 비율로 전문지도자 배치

※ 단, 항공활동의 경우 인증위원회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	1	1	11	11	4
2	2	1	12	12	4
3	3	1	13	13	5
4	4	2	14	14	5
5	5	2	15	15	5
6	6	2	16	16	6
7	7	3	17	17	6
8	8	3	18	18	6
9	9	3	19	19	7
10	10	4	:	:	: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 산악, 장거리 걷기 활동 및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스키활동 포함)

-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대비 15:1의 비율로 지도자를 배치하며,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각 활동에서 요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배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원	전체 지도자 수	전문 지도자 수
1~15	2	1	151~165	11	4
16~30	2	1	166~180	12	4
31~45	3	1	181~195	13	5
46~60	4	2	196~210	14	5
61~75	5	2	211~225	15	5
76~90	6	2	226~240	16	6
91~105	7	3	241~255	17	6
106~120	8	3	256~270	18	6
121~135	9	3	271~285	19	7
136~150	10	4	:	:	:

◇ 교육대기 (위험도가 높은 활동 중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

대기하는 인원	전체 지도자 수	대기하는 인원	전체 지도자 수
1~30	1	301~330	11
31~60	2	331~360	12
61~90	3	361~390	13
91~120	4	391~420	14
121~150	5	421~450	15
151~180	6	451~480	16
181~210	7	481~510	17
211~240	8	511~540	18
241~270	9	541~570	19
271~300	10	:	:

2) 작성 예시 및 양식

〈작성 예시〉			
(통합)1-F 단위프로그램 내용			
〈비대면방식 비집합 활동예시〉			
단위 프로그램명	방구석 그린라이트②		활동인원
			20명
단위프로그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품 등을 활용하여 기능이 다른 새로운 물품을 만들 수 있다. ○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활동장비 (기자재)	품 목	수량	개인지참 · 기관제공(구입or보유or대여)
	현옷	1	개인지참
	가위	1	개인지참
	바느질 도구	1	개인지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안내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진행 ○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가위와 바느질 도구를 활용하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시간 내 결과물이 제작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관리 지도자가 활동종료 후 피드백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단계	활동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대화 기능의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확인 ○ 특히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단위프로그램 활동순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신저를 통해 만들기 순서와 기자재 사용방법 안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옷으로 만든 에코백, 파우치, 그밖에 다른 물품 등 만들어진 사례 사진 안내 ○ 현옷의 상의와 하의 중 활용하면 좋은 부위 안내 ○ 개인별 만들 에코백 또는 파우치를 기획하도록 안내 ○ 개인별 현옷을 활용한 에코백 또는 파우치 만들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소년은 각자가 기획한 물품 만들기 진행 - 만들면서 질문사항 또는 공유사항 등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며 지도자는 즉각 피드백 실시 ○ 시간 내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피드백 실시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만든 결과물 공유 및 설명하기 ○ 사용한 기자재 정리하도록 안내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전문지도자 전문성	전문성 수준 해당 활동 지도 경력 1년	발급 기관 해당기관장	
활동관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소년관리(출결, 접속상태 확인 등) ○ 진행 상황 안전관리 ○ 실시간 대화(댓글 등)를 통한 소통 및 내용 숙지 확인 ○ 문제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 정보통신 윤리 저해 행위 발생 시 조치 등 	활동관리 지도인원	2명

<비대면방식 **집합** 활동 양식>

단위 프로그램명	가족과 함께하는 방구석 그린라이트②		활동인원	20명
단위프로그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품 등을 활용하여 기능이 다른 새로운 물품을 만들 수 있다. ○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활동장비 (기자재)	품 목	수량	개인지참 · 기관제공(구입or보유or대여)	
	헌옷	1	개인지참	
	가위	1	개인지참	
	바느질 도구	1	개인지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안내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진행 ○ 안전에 유의하여 보호자와 함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가위와 바느질 도구를 활용하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시간 내 결과물이 제작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관리 지도자가 활동종료 후 피드백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단계	활동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대화 기능의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확인 ○ 특히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단위프로그램 활동순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신저를 통해 만들기 순서와 기자재 사용방법 안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옷으로 만든 에코백, 파우치, 그밖에 다른 물품 등 만들어진 사례 사진 안내 ○ 헌옷의 상의와 하의 중 활용하면 좋은 부위 안내 ○ 가족 별 만들 에코백 또는 파우치를 기획하도록 안내 ○ 가족 별 헌옷을 활용한 에코백 또는 파우치 만들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별 논의를 통해 기획한 물품 만들기 진행 - 만들면서 질문사항 또는 공유사항 등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며 지도자는 즉각 피드백 진행 ○ 시간 내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피드백 실시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별 만든 결과물 공유 및 설명하기 ○ 사용한 기자재 정리하도록 안내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전문지도자 전문성	전문성수준 해당 활동 지도 경력 1년	발급기관 해당기관장
집합장소	집합장소 참가청소년의 집	실내·야외 실내
활동관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소년관리(출결, 접속상태 확인 등) ○ 진행 상황 안전관리 ○ 실시간 대화(댓글 등)를 통한 소통 및 내용 속지 확인 ○ 문제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 정보통신 윤리 저해 행위 발생 시 조치 등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활동관리 지도인원</div> <div style="margin-left: 20px;">2명</div> </div>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F 단위프로그램 내용

〈비대면방식 **비접합** 활동 양식〉

단위 프로그램명				활동인원	명
단위프로그램 목표	○ ○				
활동장비 (기자재)	품 목	수량	개인지참 · 기관제공(구입or보유or대여)		
유의사항	○ ○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				
전개	○				
마무리	○				
전문지도자 전문성	전문성수준		발급기관		
활동관리 내용	○ ○ ○ ○			활동관리 지도인원	명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비대면방식 집합 활동 양식>

단위 프로그램명				활동인원	명
단위프로그램	○				
목표	○				
활동장비 (기자재)	품 목	수량	개인지참 · 기관제공(구입or보유or대여)		
유의사항	○ ○				
활동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전개	○				
마무리	○				
전문지도자 전문성	전문성수준		발급 기관		
활동장소/ 세부활동장	집합장소		실내 · 야외		
	집합장소명		실내 or 야외		
활동관리 내용	○ ○ ○ ○			활동관리 지도인원	명

마. (통합)1-G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 실외 및 야외에서 운영되는 활동에 대해 대처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을 시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활동은 유사 시 대처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 갑작스러운 온라인 접속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
- 성희롱 및 정보통신윤리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
- 그 외 비대면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시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실외 및 야외에서 운영되는 활동에 대해 유사 시 대처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 모든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진행될 경우 계획하지 않아도 무방
- 실제 프로그램에 맞는 내용으로 대처방안 기술
- 활동 중 유사 시에 대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야 함
- 본 프로그램이 원 외에서 진행될 경우 장소 이동시간을 포함한 대처계획 수립
- 실외 및 야외에서 운영되는 활동에 대해 유사 시 대처방안을 필수로 제시하거나 대처 방안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우천, 강풍, 폭염,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필요)

(예시) 기상 악화에 따른 활동 진행 계획

◇ 우천 시 대처계획

- 활동 중 강우량 10ml 미만일 경우 우비 지급 후 진행
- 활동 중 강우량 10ml 이상일 경우 활동 중단 후 대피장소(체육관)로 이동

◇ 강풍 시 대처계획 : 순간풍속 초속 7m/s 이상일 경우 활동 체험 중단 및 활동 연기

◇ 폭염 시 대처계획 : 폭염주의보 발령 시 활동 시간 제한 및 충분한 휴식시간, 식수제공 후 실시

◇ **미세먼지(황사) 시 대처계획**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마스크 제공 후 활동, 경보 발령 시 실내장소(세미나실)로 이동하여 활동 운영

※ 위의 기상 악화에 따른 활동 진행 계획은 예시이며 활동내용에 맞게 필요 시 대피 장소 등도 기술되어야 함(심사 시 활동내용에 맞추어 대처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대처방안으로 대체프로그램을 기획한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대처방안을 수립하였을 시 반드시 대체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제시된 대체프로그램의 수는 본 프로그램 수를 초과하지 못함
- 실외·야외활동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은 실내프로그램으로만 제시 가능
- 대체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에 필요한 기자재, 지도력, 활동장 등이 증빙되어야 함
- ※ 본 프로그램이 모두 실외, 야외에서 진행되지만 대체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의 진행 장소에 대한 공통기준 5번(활동장 정보 및 활동장 안전관리 사항) 제시 필요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활동에서의 대체프로그램은 하나의 본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시하며,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관성 확인 (시간과 인원도 동일해야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서 중요프로그램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은 하나의 본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시하며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성을 가져야 하지만, 중요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은 전반적인 활동 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의 중요프로그램이 실외나 야외에서 진행된다면 반드시 대체 프로그램 (또는 중요프로그램 활동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구분	대처 방법	비상시 연락망	비고
갑작스러운 온라인 접속 문제	1. 컴퓨터 재부팅 2. 단체 채팅을 활용한 운영 담당자에게 도움 요청 3. 운영 담당 지도자에게 유선 전화 연결을 통한 도움 요청	000-000-0000	
경미한 안전사고	1. 학부모에게 도움 요청 2. 운영 담당 지도자에게 유선 전화 연결을 통한 도움 요청	000-0000-0000	
성희롱 및 정보통신윤리 관련 사고	1. 영상 콘텐츠 활동 시 성희롱 및 인격침해 관련 사고 발생 시 담당자 유선 보고 2. 콘텐츠별 전문가에게 성희롱 및 인격침해(정보 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담당자 유선 보고	000-0000-0000	
우천 시 대처계획	1. 활동 중 강우량 10ml 미만일 경우 우비 지급 후 진행 2. 활동 중 강우량 10ml 이상일 경우 활동 중단 후 대피 장소(OOO)로 이동		비대면 집합
강풍 시 대처계획	1. 순간풍속 초속 7m/s 이상일 경우 활동 체험 중단 및 활동 연기		비대면 집합
폭염 시 대처계획	1. 폭염주의보 발령 시 활동 시간 제한 및 충분한 휴식시간, 식수 제공 후 실시		비대면 집합
미세먼지(황사) 시 대처계획	1.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마스크 제공 후 활동, 경보 발령 시 실내장소(OOOO)로 이동하여 활동 운영		비대면 집합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G 유사 시 대처방안

<대처방안>

- ⇒ 비대면방식 집합 활동 진행 중 발생하는 유사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야 함(갑작스러운 우천, 강풍, 폭염, 미세먼지(황사)등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 대체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만 제시 가능
- ⇒ 비대면방식(비집합) 활동 진행 중 발생하는 유사 시 상황과 대처방안, 비상시 연락망을 작성

구분	대처 방법	비상시 연락망	비고

〈유사시 대체프로그램 양식 - 야외에서 운영되는 비대면 집합형태인 경우에 작성〉

본단위프로그램명				활동인원	
대체단위 프로그램명					
단위프로그램 목표	○				
	○				
활동장비 (기자재)	품 목	수량	개인지참 · 기관제공(구입or보유or대여)		
유의사항	○				
	○				
활동단계	활동 내용				
도입	○				
전개	○				
마무리	○				
전문지도자 전문성	전문성 수준	발급 기관			
집합장소	집합장소	실내 · 야외			
	집합장소명	실내 or 야외			
활동관리 내용	○			활동관리 지도인원	명
	○				
	○				
	○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바. (통합)1-H 프로그램 환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통합)공동1-H. 프로그램 환류계획

내용	<p>아래의 환류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및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운영</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프로그램 실시</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 실시 후 평가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만족도 - 낮은 점수요인 개선 ○ 효과성 - 목표달성이 미진할 경우 프로그램 내용 개선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개선내용 반영(환류)</p>
----	--------------------------------------------------------------------------------------------------------------------------------------------------------------------------------------------------------------------------------------------------------------------------------------------------------------------------------------------------------------------------------------------------------------------------------------------------------------------------------------------------------------------------------------------------------------------------------------------------------------------------------------------------------------------------------------------------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H 프로그램 환류계획

사. (통합)1-1, (통합)1-2 프로그램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프로그램 목표를 기준으로 참여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과정과 운영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프로그램 평가계획과 평가도구가 증빙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평가계획은 1-H의 환류계획에 적합하게 기술되어야 함
 - 환류계획에 사전, 중간 평가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평가계획과 도구도 동일하게 계획되고 증빙되어야 함
- 계획된 평가도구가 증빙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목적 혹은 목표와 연관된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도구는 반드시 증빙되어야 하고, 평가대상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효과성과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종결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 혹은 목표와 연관된 만족도,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야 함. (만족도와 효과성 설문지는 개별 작성하거나 두 개를 합하여 작성해도 무방)

! (통합)1-1, 2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어해설

- 만족도 : 프로그램 내용, 지도자, 활동환경 등의 흥미정도와 편리성 등 참여자 욕구 충족 정도
- 효과성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달성된 정도
- 평가도구 :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대로 준비된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 등의 도구

◇ 장애캠프 등 참가자 특성상 정확한 평가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참가 기관의 인솔지도자 및 활동에 참여한 지도자 등을 통한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 평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참가자(청소년)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가 부연설명 등으로 기술되어야 함.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통합)1- 프로그램 평가계획

평가시기	대상	내용	평가도구
종결평가	청소년	- 프로그램 만족도·효과성 조사	만족도·효과성 설문지

(통합)1- 프로그램 평가도구

활동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본 설문지는 참가한 여러분의 활동 참여 후 만족도와 효과성을 조사하여 이후 더 발전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목적외에 다른 어떠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편하게 선택해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여() ②남()

2. 다음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분 야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프로 그램	1.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은 재미있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은 나의 수준에 적합했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활동 환경(온라인 접속 환경 등)은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지도자	1.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도자의 강의 전달력은 우수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효과성	1.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는 원인을 이해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라별 문화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차별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경험 또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1-1 프로그램 평가계획

평가시기	대상	내용	평가도구

(통합)1-1 프로그램 평가도구

2 (통합)공통기준2 프로그램 자원운영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2-1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2-A 2-B 2-C
2-2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F

가. (통합)2-A, (통합)2-B, (통합)2-C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인 예산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프로그램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 (기관운영비 등은 불포함)
 - 인증신청서의 참가자 부담액과 일치여부 확인
 -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구입, 임대하거나 지도자를 초빙할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운영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총사업비와 산출내역(소요비용)이 동일할 시에는 수익금 내역을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기관보유 시설 자체의 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가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보험가입 예산을 세부 산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 ※ 비대면방식의 경우에도 전체활동장에 대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보험가입계획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기재해야함.
- 사업비 총괄표와 산출내역·수익금의 합계가 일치한다.

! (통합)2-A,B,C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어해설

- 사업비 총괄표 : 자체부담액, 후원 및 지원액, 참가자 부담액 등 신청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사업비 산출내역 : 신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수익금 : 총사업비와 산출내역(소요비용)의 차액

◇ 유의사항

- 사업비의 산출 기준 :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1회 운영 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
예) 프로그램의 1회 운영 시 참가인원이 50명일 경우 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신청, 1년에 50
명씩 100회를 운영한다고 하여 연인원인 5,000명을 기준으로 인증 신청하는 것은 불가
- 기자재 중 구입 예정 물품이 있거나, 청소년활동배상보험 가입 계획 등이 있을 경우 산출
내역에 기재
- 컨소시엄형 인증신청일 경우에도 보험비가 산출내역에 기재되어야 함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통합)공통2-A 사업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금액	총사업비(합계)
자체부담액	0 원	5,500,000 원
후원 및 지원액	0 원	
참가자 부담액	5,500,000 원	
기타	0 원	

■ (통합)공통2-B 사업비 산출내역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액
	금액	수량	횟수	
식사비	7000 원	100 개(명)	2회	1,400,000 원
숙박비	10000 원	100 개(명)	1회	1,000,000 원
홍보비(현수막)	100000 원	2 개(명)	1회	200,000 원
프로그램 체험비	10000 원	100 개(명)	1회	1,000,000 원
재료비(색종이, A4, 필기도구 등)	1000 원	100 개(명)	1회	100,000 원
감사비(송신타블프로그램)	150000 원	1 개(명)	2회	300,000 원
합계	4,000,000 원			

■ (통합)공통2-C 수익금 내역

총사업비	산출내역(소요비용)	수익금
5,500,000 원	4,000,000 원	1,500,000 원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2-A 사업비 총괄표

구분	금액	총사업비 (합계)
자체부담액		
후원 및 지원액		
참가자 부담액		
기타		

(통합)2-B 사업비 산출내역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액
보험가입비		

(통합)2-C 수익금 내역

총사업비	산출내역(소요비용)	수익금

3 (통합)공통기준3 지도자 자격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3-1 규정 제26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인증신청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A
3-2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	3-B
3-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F
3-4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6-A 6-B
3-5 지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예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3-C

가. (통합)3-A 규정 제26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인증신청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담당 지도자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운영담당자는 인증신청 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 재직증명서의 발급자명은 인증신청 기관장명과 동일해야 함
 - 대표 운영담당자 외 2명 이내의 대체 운영담당자 지정 가능함 (단, 대표 운영담당자와 인증신청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증 될 수 있음)
 - 컨소시엄형으로 인증신청한 경우 모든 컨소시엄 구성기관의 운영담당자도 증빙되어야 함
- 운영담당자의 자격요건(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제4항과 관련)을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증, 경력증명서,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증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증빙
 - 경력으로 운영담당자 자격을 증빙할 경우 경력이 청소년활동 지도업무일 경우만 인정 (경력 사항 증빙 시 업무내용 포함하여 증빙)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 위 4가지 자격요건(운영규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과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 ◇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 ※ 인증신청서에 운영담당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증정보시스템에 인증신청 기관의 시설 단체 담당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통합)3-A 작성 시 유의사항

- ◇ 인증신청 기관에 운영담당자가 재직하고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내용과 현재의 재직사항이 일치한다면 발급일자에 관계없이 재직증명서를 재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인증 신청 기관에 상근 재직하는 지도자의 행정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제한이 없으나 지도자는 인증신청 기관에 상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 4대 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라면 해당 지도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인증심사 단계에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재직증명서 예시	자격증 예시
⇒ 이 외에 경력,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3-A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요건

□ 운영담당자 재직증명서	□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운영담당자 등록 관련 Q&A

Q. 대표 운영담당자는 누구를 등록해야 하나요?

A. 시스템에 첫 번째로 등록된 지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대표 운영담당자가 됩니다. 대표 운영담당자에게는 해당 활동에 대한 심사 및 심의 일정 안내,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안내 등 유선 및 SMS 알림이 전달됩니다. 대표 운영담당자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지도자가 등록되어야 사업과 관련된 안내 전달이 누락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운영담당자를 추가로 등록하려는데, 등록 가능 목록에 해당 지도자 이름이 없습니다.

A. 시설단체 관리>시설단체 담당자 관리에서 해당 지도자의 자격사항, 재직사항, 인적사항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한 운영담당자 목록에 이름이 노출됩니다.

나. (통합)3-B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

⇒ 안전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

※ 비대면방식에서의 (안전)전문인력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참여청소년이 안전 상 유사 시가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1) 확인요소

- (안전)전문인력은 인증신청 기관에 재직하거나 활동에 배치된다는 승낙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신청기관 명의로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지도자 승낙서(인증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일자의 서류) 증빙 필요
 - 기관에 재직 중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안전)전문지도자 승낙서
 - 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안전)전문지도자 승낙서
 - 운영담당자와 (안전)전문인력은 동일 인물이어도 무방
- (안전)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제5항과 관련)을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증, 수수료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증빙

(안전)전문인력 자격요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간호사, 한의사
 -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 ◇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정받은 내용은 e청소년> 게시판> 심의결과 공고에서 확인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재직여부 또는 지도자 승낙서 증빙서류 예시

재직증명서 증빙의 경우	지도자 승낙서 증빙의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 <h4>재 직 증 명 서</h4> <table border="1"> <tr> <td>인적사항</td> <td>성명</td> <td>한길</td> <td>홍길동</td> <td>주민등록번호</td> <td>900101-1</td> </tr> <tr> <td rowspan="2">주 소</td> <td colspan="5">서울특별시 서대문구</td> </tr> <tr> <td colspan="5">소 속 : 활동운영</td> </tr> <tr> <td rowspan="2">재직사항</td> <td colspan="5">직위 또는 직급 : 청소년지도사</td> </tr> <tr> <td>기 간</td> <td colspan="4">2015.05.01 부터 ~ 현재까지</td> </tr> <tr> <td>용도</td> <td colspan="5">수련활동인증제 증명</td> </tr> </table> <p>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19년 1월 1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p> </div>	인적사항	성명	한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 속 : 활동운영					재직사항	직위 또는 직급 : 청소년지도사					기 간	2015.05.01 부터 ~ 현재까지				용도	수련활동인증제 증명					<div style="text-align: center;"> <h4>(안전)전문지도자 승낙서</h4>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홍길동</td> <td>생년월일</td> <td>1990-01-01</td> </tr> <tr> <td>성명</td> <td>홍길동</td> <td>주민등록번호</td> <td>90010101010101010101</td> </tr> <tr> <td>성명</td> <td colspan="3">050-1234-5678</td> </tr> <tr> <td>소속기관명</td> <td colspan="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td> </tr> <tr> <td>활동기간</td> <td colspan="3">기간 : 2015.05.01 ~ 현재까지</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3">활동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활동기간 : 1회 이상, 증명서기 지정업무명 : 기타</td> </tr> </table> <p>본원은 위 기관에서 인증 신청한 성가 활동의 모든 절차에 대해 (안전)전문지도자로서 해당 지도 역할을 담당할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1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홍길동 (홍길동 (안))</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p> </div>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01010101010101	성명	050-1234-5678			소속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간	기간 : 2015.05.01 ~ 현재까지			비고	활동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활동기간 : 1회 이상, 증명서기 지정업무명 : 기타		
인적사항	성명	한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 속 : 활동운영																																																										
재직사항	직위 또는 직급 : 청소년지도사																																																										
	기 간	2015.05.01 부터 ~ 현재까지																																																									
용도	수련활동인증제 증명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01010101010101																																																								
성명	050-1234-5678																																																										
소속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간	기간 : 2015.05.01 ~ 현재까지																																																										
비고	활동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활동기간 : 1회 이상, 증명서기 지정업무명 : 기타																																																										

* (안전)전문지도자 승낙서 양식은 e청소년>수련활동인증>계시판>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증빙서류 예시



Korean Red Cross

응급처치 일반과정

증명서번호 : 05-12345678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90-01-01

발급일 : 18.11.07

유효기간 : 18.11.07 - 20.11.06

대한적십자사회장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3-B (안전)전문인력 자격요건

<input type="checkbox"/> (안전)전문인력 승낙서 (또는 재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안전)전문인력 자격요건

? (안전)전문인력 등록 관련 Q&A

Q. 재직증명서와 지도자 승낙서를 모두 증빙해야 하나요?

A. 재직증명서 또는 안전 지도자 승낙서 중 1개만 선택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재직하는 지도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지도자 승낙서를, 재직하지 않지만 활동에 배치되는 지도자일 경우에는 지도자 승낙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다. (통합)3-C 지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예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프로그램 지도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제3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활동에 배치되는 모든 지도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조회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지도자 운영계획이 확인되어야 함
- ※ 조회 결과는 증빙하지 않으며 실제 활동 시 계획에 따라 지도자를 운영하여야 함
- 비대면방식의 경우 참여자 중 활동관리 지도자로서 법적 보호자가 배치 된 경우 범죄경력 확인조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근거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기관은 사실상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제56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근거가 해당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 (<http://www.sexoffender.go.kr/>)을 활용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계획 수립

성범죄 경력 조회 기준일

- ◇ 프로그램 운영 시 인증신청 기관에서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것으로 같음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의 기관은 인증 신청 기관에 입사(단기 노무제공도 동일) 시 실시한 것으로 같음
-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신고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신고서류(지도자 명단) 제출 계획으로 성범죄자 확인 계획을 같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 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

편리한 범죄경력 조회 방법

-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 (사이트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① 인증신청기관이 사이트에 시설(기관) 정보등록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만 등록 가능
 - ② 인증신청기관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예정자가 사이트에 접속,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 ③ 인증신청기관의 장이 해당 지도자 범죄경력 확인
- ◇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 사용 (사이트 주소 : www.sexoffender.go.kr)

2) 작성예시 및 시스템 등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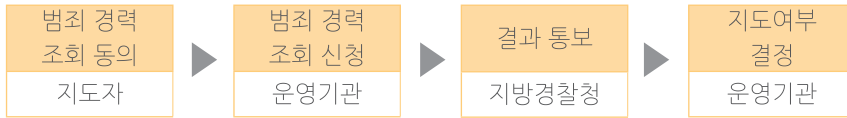
<작성예시>

- 인증신청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 활동 실시 14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하여 전체 지도자의 범죄경력 조회 후 부적격자일 경우 관리방안 수립(단, 청소년수련시설에 재직하는 지도자는 입사 시 실시한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범죄경력 조회 같음)
- 인증신청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하여 지도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계획 수립
 - 성범죄자 사전 확인 계획
 - 인증수련활동 실시 전 12개월 이내에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을 때 조회
 - 성범죄 조회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
- 법적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생략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3-C 지도자 범죄경력 확인 계획

〈인증신청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1호 ~ 18호에 해당할 경우〉



※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은 위와 같은 계획 수립

〈인증신청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1호 ~ 18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하여 지도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계획 수립
 - 성범죄자 사전 확인 계획
 - 인증수련활동 실시 전 12개월 이내에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을 경우 조회
 - 성범죄 조회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

※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혹은 임의단체는 위와 같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사용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 계획 수립

〈법적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생략

4 (통합)공통기준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4-1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4-A
4-2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별표 9-1]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은 [별표 9-2]의 배치규정을 따른다.	1-F
컨소시엄 4-3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와 협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4-B 4-C

컨소시엄 컨소시엄일 경우에만 적용

가. (통합)4-A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 지도자가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에서 기대되는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배치 및 지도관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1) 확인요소

- 운영담당자, (안전)전문인력, 전문지도자, 보조지도자의 역할을 확인 가능하다.
 - 운영담당자와 (안전)전문인력의 역할은 필수이지만 다른 지도인력의 역할은 기관 및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제시
- 운영담당자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 외에도 아래와 같은 필수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면방식
 - 참여청소년 관리(대상, 참여자 수, 안전교육, 특이사항 등)
 - 지도자 관리(인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지도력, 특이사항 등)
 - 비상연락망 숙지, 활동장소 특징 파악
 -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 비대면방식

· 참여청소년 관리(대상, 참여자 수, 출석관리, 안전교육 및 서약서 관리, 특이사항 등)

· 지도자 관리(지도력, 특이사항, 안전교육 및 서약서 관리 등)

· 활동 중 유사시 및 비상상황(안전사고, 시스템 에러 등)에 대한 대응체계 숙지

· 활동 콘텐츠 관리(참여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적합한 해상도 관리,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종료 후 삭제 등 관리)

·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 인증수련활동 운영전반 모니터링 및 총괄 책임

※ 집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상연락망 숙지, 활동장소 특징 파악 등의 역할이 추가됨

○ (안전)전문인력은 프로그램 운영 시 활동장소 내 위치하여 아래와 같은 필수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활동장소 내 위치하여 참여청소년 응급처치, 안전사고 시 1차 대응

- 비상연락망 숙지

○ 전문지도자와 보조지도자에 대한 역할은 인증신청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2) 작성 양식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4-A 지도자 역할

구분	역할
운영담당자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운영 시) - 참여청소년 관리(대상, 참여자 수, 출석관리, 안전교육 및 서약서 관리 특이사항 등) - 지도자 관리(지도력, 특이사항, 안전교육 및 서약서 관리 등) - 활동중유사시 및 비상상황(안전사고, 시스템 에러 등)에 대한 대응체계 숙지 - 활동콘텐츠 관리(참여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적합한 해상도 관리,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종료 후 삭제 등 관리) -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 인증수련활동 운영전반 모니터링 및 총괄 책임 (집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내용 추가) - 비상연락망 숙지 - 활동장소 특징 파악
(안전)전문인력	- 활동장소 내 위치하여 참여청소년 응급처치, 안전사고 시 1차 대응 - 비상연락망 숙지
전문지도자	⇒전문지도자 역할이 있을 시 기술
보조지도자	⇒보조지도자 역할이 있을 시 기술

※ 양식에 작성된 담당자 별 역할은 필수사항입니다. 이 외 추가 역할을 작성하실 경우 해당 양식에 추가하여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컨소시엄 (통합)4-B, (통합)4-C 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관과 협업 혹은 컨소시엄 등이 있을 경우 역할 분담정도와 협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컨소시엄형 활동 운영 시 기관간의 관계 및 역할 분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컨소시엄 기관별 아래와 같은 역할을 확인 가능하다. (구성기관 모두)

역할	내용	비고
홍보	활동 홍보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 접수받는 기관	참가 신청 양식에 컨소시엄 구성 기관명 모두 기입
사후관리	실시일자 통보, 변경, 활동기록 등록, 활동신고 (해당 시)	인증신청기관 필수역할
단위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엄 인증신청 활동에서 운영하는 단위프로그램명 기술 (최소 1개 이상의 단위프로그램 운영)	인증신청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운영비율이 높아야 함

○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의 인증수련활동 운영 협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협약(활동명도 포함), 협약기간, 운영내용, 기관별 역할, 책임사항, 보험가입(컨소시엄 구성 기관 동시에 가입), 인증사후관리 등

○ 인증 신청한 활동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협약기간 이내로 지정되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운영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통합 공통3-A 관련)

개별단위 프로그램 운영

◇ 개별단위프로그램 운영은 컨소시엄 구성 기관이 모두 함께 운영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는 해당 개별단위프로그램 운영에 구성 기관 소속 지도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야 함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2) 작성예시

<작성예시>

■ (통합)공통4-B. 컨소시엄 기관별 역할

역할	내용	기관명	비고
홍보	프로그램 홍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가모집	참가자 모집 및 관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재 및 청소년 활동기록 관리 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담당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0분(1시간)
	미션 오리엔티어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90분(2시간 30분)
	미션 오리엔티어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90분(2시간 30분)
	포리스트어드벤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120분(2시간)
	공동체 한마당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90분(2시간 30분)
	숲밧줄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0분(1시간)
	숲밧줄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0분(1시간)
	프로그램 마무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0분(1시간 30분)

(통합)공통4-C 컨소시엄 협약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인증신청 활동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협약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

인증수련활동 운영과 관련된 협약(활동명도 포함), 협약기간, 운영내용, 기관별 역할, 책임사항, 보험가입, 인증사후관리 등

20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박 0 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김 0 0

5 (통합)공통기준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5-1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단,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는 경우 공간과 설비의 확보계획이 제시되어있다)	5-A 5-B
5-2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5-C

가. (통합)5-A, (통합)5-B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단,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는 경우 공간과 설비의 확보계획이 제시되어있다)

⇒ 활동장이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 프로그램에 운영에 적합한 공간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활동장 사용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증(해당 시) 제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의 기관명이 동일하여야함 (사업자 번호도 동일))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증빙
 - 유스호스텔은 허가된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 사본 증빙
- 대면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대한 확보 서류가 확인된다. (숙식 장소 포함)
 - ※ (통합) 공통1-F의 활동장 현황에 맞게 증빙되어야 함
 - 보유 : 사업자등록증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추가 증빙)
 - 위탁 : 위·수탁협약서
 - 임차 : 임차계약서 (계약서에 활동장 관리 주체가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예약 : 예약확인서
 - 개방 : 증빙서류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공간과 설비의 확보계획이 확인된다.

- 집합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기술

※ 비대면방식 중 비집합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없음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통합)공통5-A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수련시설등록증 증빙의 경우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공통5-B 활동장 확보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집합하는 경우 :
 참여 청소년의 집, 카페, 수련시설 등
 ※ 활동장 확보 서류를 증빙하지 않아도 무방함.
- (대면방식 청소년활동)
 ※ 활동장 확보서류는 활동 실시 예정일에 인증신청기관이 해당 장소를 확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
 (상기 예시의 시설사용 허가서 중 사용기간에 활동일이 포함 된 것을 확인)

The image shows a 'Facility Use Permission Form' (시설사용 허가서) from the National Youth Center.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Applicant' (신청인), 'Representative' (대표자), 'Facility Name' (시설명), 'Address' (소재지), 'Use Period' (사용기간), and 'Use Purpose' (사용목적). The 'Use Period' field is highlighted with a blue box and contains the text '2023. 08. 01 ~ 2023. 08. 31'. The 'Use Purpose' field is also highlighted with a blue box and contains the text '2023년 여름 캠프'. The form is signed by the National Youth Center (원본대조됨).

나. (통합)5-C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다.

⇒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과 위생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모든 활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주기가 확인된다.
- 활동장의 확보방법에 따라 각 분야별 활동장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
- 비대면방식의 경우 집합여부 및 보유여부에 따른 적합한 점검결과 또는 점검계획을 확인
- 활동장 안전점검 내역(점검결과, 점검일시, 점검자 및 확인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활동장 위해요소 등 부적합 사항이 없어야 함

구분	집합활동	비집합활동
보유 활동장	○ 실내: 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수질검사, 화장실 위생상태, 안전점검(시설관리) ○ 실외: 안전점검(활동장관리)	해당없음
미보유 활동장	○ 실내·실외·야외 점검계획 및 점검 양식	

<비대면방식 집합 활동장을 인증신청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소	점검사항	점검주체	점검시점	점검주기	기타
실내	전기	외부점검	1년 이내	1년	
	소방	외부점검	1년 이내	1년	
	가스	외부점검	1년 이내	1년	- 가스의 종류에 따라 6개월 이내일 경우 6개월을 점검시점 및 주기로 함
	엘리베이터	외부점검	1년 이내	1년	
	수질검사	외부점검	1년 이내	1년	
	화장실 위생상태	내부점검	30일 이내	7일	
실내	안전점검 (시설관리)	내부점검	90일 이내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상의 결재 필요(점검자, 확인자)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결과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4의 양식과 같은 안전 점검표 증빙 -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4의 양식과 같은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해당 활동장에 맞는 사항 점검한 결과 증빙
실외	안전점검 (활동장관리)	내부점검	90일 이내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상의 결재 필요(점검자, 확인자)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결과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4의 양식과 같은 안전 점검표 증빙 -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4의 양식과 같은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해당 활동장에 맞는 사항 점검한 결과 증빙

장소	점검사항	점검주체	점검시점	점검주기	기타
공동	건축물대장			등록 내용에 변동 발생 시	- 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증빙
	토지대장			등록 내용에 변동 발생 시	- 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축물이 없을 경우 증빙 ※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으로 같음 가능

- 인증신청기관에서 활동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점검주기는 1년 이내로 설정
-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점검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초과 점검 가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현행법률과 해당 법률에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점검주기가 별도의 유효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내 점검’으로 작성하고 그 증빙을 제시(현행법률 및 근거자료)
-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점검주기가 1년 미만일 경우 :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 및 점검 주기 제시(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는 6개월 주기로 점검)
-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활동장의 경우 법적근거 제시
- 활동장에 가스 및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

※ 활동장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등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등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을 확보하여야 함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용어해설

◇ 외부점검과 내부점검

- 외부점검 : 해당 시설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 (전기점검 회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시
- 내부점검 : 해당 시설 점검을 인증신청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 인증신청 시 점검시점 기준일

- 인증신청일로부터를 기준으로 함 (인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

편리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확인하기



자주 찾는 서비스
민원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주민등록초본 (초본교부)	토지양여대상 명단(승권) 발급신청	건축물대장 등소본 발급(명단)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및 열람	지역/오(인)역도 확인신청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자동차 등록허용분 (초본)발급/명단신청	현황신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병역증명서발급	소득금액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운전면허 발급조회	민원받은 내용 보기	지역특정발판서	교통법규를 과태료 유령을 연수 신고	개인소득 과세부부 조회

- 검색창에 정부24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주소 : 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명단)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발급건당500원, 열람건당300원, 인터넷 발급(명단)시 무료	신청서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서 상세
구비서류	없음 (허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에 건축물 대장 혹은 토지대장 클릭
- 신청하기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

활동장 안전점검표 예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활동장 안전점검표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계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진입로	1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절한가?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2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는 장애인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중정형 계단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추락방지용 그물망의 지지상태(철물고정, 철물의 녹슨 정도, 그물의 하중상태)는 양호한가?			
	3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4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생활관	1	소방법에 적합하게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2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창호에 안전바 설치유무 등)?			
	3	침구류 등의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4	각 실내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양호교사, 간호사 등)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실내수영장	1	수심표시 등 안전표시판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2	풀장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3	풀장 내·외부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로 설계되어 있는가?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모험시설 및 옥외구조물	1	모험시설 상호 간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3	모험시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적정한가?			
	4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5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6	안전요원, 그 밖의 수련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 사항
소방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사용. 그 외 시설은 양식을 참고하여 활동장에 맞는 사항을 점검

화장실 위생점검표 예시

화장실 위생점검표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구분	점검항목	확인
실내 청결	바닥에 오물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변기에 오물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바닥은 2-3일에 한 번 락스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세면대 거울은 깨끗합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변기 레버나 핸들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에 환기용 창문이 있습니까?	
	환기를 위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의 조명이 20룩스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비품 구비	휴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수건이 세탁되어진 것입니까?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시설 관리	수도꼭지가 잘 잠깁니까?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까?	
	변기물이 잘 내려갑니까?	
	수건은 매일 1회씩 세탁합니까?	
	욕조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해당 내용은 예시임. 활동장의 특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잘못된 활동장 안전점검 작성예시

대한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안전점검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

◆ 점검일시 : 2018년 10월

◆ 점검자 : 홍길동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 결과 기록유지) 여부	○		
	2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		
	3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계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		
	4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 토목부분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주의관찰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		
	3	옹벽 부분에 배수를 현상이 있는가?	○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받,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증빙된 것과 같이 인증신청 기관의 관리자 결재, 확인 없이 담당자성명만 있거나, 1인의 서명만 있을 경우 인증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 활동장 점검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흡

◇ 점검표 내 점검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미흡(해당되지 않는 점검사항은 명확하게 표기)

◇ 점검항목 내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

※ 부적합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활동장 점검표의 일부만 증빙하여 점검결과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방식 집합 활동장을 인증신청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장소	점검사항	점검주체	활동실시 전 점검시점	기타
실내	안전점검 (활동장관리)	내부 점검	인증수련활동 시작 전	- 활동 장 별 배치되는 보조지도자 1인 결재 진행 - 양식에 작성된 점검내역은 필수사항이며 장소 사정에 따라 추가 점검 가능

〈집합 활동장을 인증신청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점검표 양식〉

활동장 안전점검표

점검자(보조지도자)

점검일 :

구분	점검항목	적 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비대면활동 집합활동 (실내)	장소의 크기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가?		
	주변에 참여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가?		
	유사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혹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6 (통합)공통기준6 안전관리 계획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p>3-4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6-1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사전안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단, 비대면방식으로 운영되고 참여자가 집합하지 않는 경우 법적보호자의 교육 등 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 있다)</p>	<p>6-A 6-B 6-C</p>
<p>6-2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가 계획되어 있다.</p>	<p>6-D 6-E</p>
<p>6-3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사고대책과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6-F 6-G 6-H</p>
<p>6-4 제37조의2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특별 실시간 1-3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p> <p>특별 실시간 1-5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p> <p>특별 콘텐츠 1-4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사용된 콘텐츠의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특별 콘텐츠 1-6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p> <p>특별 과제 1-5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p>	<p>6-I</p>
<p>6-5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협업 또는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운영기관 모두)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대인 8천만원 이상, 대물 2백만원 이상)</p> <p>특별 학단 1-2 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기관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6-J</p>

학단 : 학교단체 숙박형 유형에만 적용 **실시간**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만 적용
콘텐츠 :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만 적용 **과제**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활동에만 적용

가. (통합)6-A, (통합)6-B, (통합)6-C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사전안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지도자와 참여청소년이 상황별 조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특성별 교육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공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교육의 내용에는 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교육 주요내용은 기관 및 활동내용에 맞게 교육내용 수립(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발행한 안전매뉴얼 참고)
- 각각의 안전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비대면방식(비집합)

교육실시	주요내용
활동환경	- 비대면방식 활동을 위한 적합한 장소(집, 강의실 등) 고지
성희롱예방	- 성희롱 정의, 예방, 대처방안 교육
저작권 침해 예방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내용 준수(저작권 이해, 저작물 침해 예방 사례,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등) - 활동결과물 제출 시 허용된 폰트 사용 교육
정보통신 윤리	- 초상권침해, 타인에 대한 외모평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금지 - 활동내용(무분별한 음성녹음 포함) 왜곡 및 임의편집 등 금지 -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등 금지 - 비방 등 악성댓글, 사이버 예절 교육 -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등
정보보안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백신 설치 등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람 금지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 타인 등 개인정보 유출 금지 교육
청소년의 자세	-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환경 조성 - 정해진 시간에 활동 참여 -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및 기자재 등 준비 철저

교육실시	주요내용
비상상황 대응	- 활동 중 유사 시 및 비상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 프로그램 시작 전 모든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육내용에 따른 필수 교육 실시 및 서약서 관리 - 일시, 장소, 교육자, 교육이수자 서명(지도자의 경우), 교육내용 명시 - 지도자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 내용 기술

- 비대면방식(집합)

교육실시	주요내용
활동환경	- 비대면방식 활동을 위한 적합한 장소(집, 강의실 등) 고지
성희롱예방	- 성희롱 정의, 예방, 대처방안 교육
저작권 침해 예방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내용 준수(저작권 이해, 저작물 침해 예방 사례,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등) - 활동결과물 제출 시 허용된 폰트 사용 교육
정보통신 윤리	- 초상권침해, 타인에 대한 외모평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금지 - 활동내용(무분별한 음성녹음 포함) 왜곡 및 임의편집 등 금지 -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등 금지 - 비방 등 악성댓글, 사이버 예절 교육 -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등
정보보안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백신 설치 등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람 금지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 타인 등 개인정보 유출 금지 교육
청소년의 자세	-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환경 조성 - 정해진 시간에 활동 참여 -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및 기자재 등 준비 철저
비상상황 대응	- 활동 중 유사 시 및 비상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
상해사고(집합)	- 활동 특징 및 상해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긴급환자 발생(집합)	- 긴급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교육실시	주요내용
화재발생 대처(집합)	-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등
활동장 특징 및 비상대피로(집합)	- 활동장 특징에 따른 안전교육, 활동시작 전 실내활동장에서 외부로의 대피로 안내
휴식시간 안전(집합)	- 휴식 시 안전사항 안내 등
성희롱 예방(집합)	- 성희롱 정의, 예방, 대처방안 등
자연재해(집합)	- 지진 등 자연재해 시 대처방안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집합)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취약 시설의 사전 안전관리방법과 청소년에게는 수상한 기기 발견 시 대응(신고) 방법 교육
요보호 청소년 관리(집합)	- 허약체질, 음식알레르기, 요주의 청소년에 대해 사전에 지도자 및 식당에서 공유 등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 프로그램 시작 전 지도자, 청소년들에게 위 교육내용에 따른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확인(지도자의 경우 서명)한 교육일지를 관리하는 계획 기술 - 프로그램 시작 전 모든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교육내용에 따른 필수 교육 실시 및 서약서 관리 - 일시, 장소, 교육자, 교육이수자 서명(지도자의 경우), 교육내용 명시 - 지도자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 내용 기술

※ 선택안전교육(활동내용에 따라 선택)

교육실시	주요내용
실종(미아가 되었을 때) * 외부활동장 이용 시	- 대기장소 안내 및 행동요령 교육 등
(장소)이동	- (장소)이동의 수단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 운전자, 운행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이 기술되어야 함 (보유, 임대, 대중교통별) -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숙박안전	- 완강기 사용법, 숙박 시 주의사항 등
안전고려 활동	- 안전고려활동 실시 전/중/후의 안전대책과 주의사항 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선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선택 안전교육 실시 대상

- 실종 : 활동장이 외부이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 경우
- (장소) 이동 : 활동장과 활동장을 이동하는 경우 (단, 활동장 내에서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가 있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시)
- 안전고려활동 :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안전고려활동을 실시할 경우
 - ※ 안전고려체크리스트의 활동 전/중/후 교육체크리스트와 활동 안전대책의 내용 교육
- 숙박안전 : 활동내용에 숙박이 있을 경우

◇ 사전 안전교육의 중요성

- 사전 안전교육은 활동의 안전사고 위험율을 현저히 낮추어 주는 등 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정보 조회 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용 (사이트 주소 : <http://www.ts2020.kr/main.do>)

- ① 사업소개 클릭 - 지도자/도로 안전 클릭 - 전세버스 정보조회 클릭 - 교통안전통보서 진위여부 클릭
- ②-1 버스회사 조회 : '전세버스 교통안전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
- ②-2 개인 버스사업자일 경우 :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조회'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도자 서약서 접수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서약서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며 청소년을 차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음

· 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올바른 언행과 정중한 자세, 단정한 모습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겠음

·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교육자료는 소중한 지적재산으로 생각하며 저작권 관련법을 준수하겠음

-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교육받은 사항을 준수하겠음
-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술선수법의 정신으로 지도하며 교육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청소년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질적으로 풍요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참여청소년 및 보호자 접수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서약서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자발적으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외모평가, 허위사실 유포 등 활동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겠음
-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겠음
- 허락 없이 자료를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겠음
- 비방, 욕설, 시비 등 악성댓글을 달지 않고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인증수련 활동에 참여하겠음
- 비대면 청소년활동이지만 실제 참여하는 것과 같이 준비물과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활동에 집중하겠음
- 참여청소년이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참여청소년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동 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 참여청소년이 참여자간 및 지도자와의 대화 시 바른말을 쓰도록 지도하겠음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6-A 안전교육 계획

※ 본 기준의 작성예시 및 양식은 통합양식에서 제시함.

(통합)6-B 지도자 서약서 접수계획

- 지도자서약서를 활동실시 전 모든 지도자에게 받을 계획
- 지도자서약서는 별도 서류철에 보관(보관기한 : 해당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청소년/보호자 서약서

활동 참여 서약서

나는 인증수련활동을 참여하는 참가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자발적으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인증수련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여 외모평가, 허위사실 유포 등 활동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인증수련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인증수련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허락 없이 자료를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인증수련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비방, 욕설, 시비 등 악성댓글을 달지 않고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이지만 실제 참여하는 것과 같이 준비물과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참여청소년이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건강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비대면 청소년활동 시간을 숙지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참여청소년과 사전에 논의하여 원활하게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동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대화하겠습니다.

하나. 참여자간 및 지도자와의 댓글이나 대화 시 즉흥적으로 욕이나 불건전한 글을 쓰지 않고 바른 말을 쓰도록 교육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OO운영기관 귀하

나. (통합)6-D, (통합)6-E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가 계획되어 있다.

⇒ 프로그램 특성별로 구비되어야 하는 구급용품 및 장비가 확보되고 배치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필수 구급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 필수 구급용품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선택 구급용품 및 장비는 해당 활동에 따라 제시
-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에 적합한 구급용품 및 장비 준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실외, 야외,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작성 제시

구 분		내 용
필수	구급용품	붕대, 압박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삼각건, 여성위생용품(생리대)
선택	구급용품	(장거리도보) 물집방지 패드, 이온음료
선택	장비	(수상활동) 자동제세동기

-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중 비접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법적보호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구급용품별 기능 및 유의사항

- ◇ 필수 구급용품
 - 붕대 : 출혈을 막거나 상처의 드레싱, 몸이나 의학기구 등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 압박붕대 : 심한 출혈 등이 일어났을 때 몸의 한 부분은 압박하도록 내리누르는 붕대 (압박대 등)
 - 가위 : 붕대를 자르거나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 반창고 : 상처의 드레싱 및 붕대 등을 고정시키는데 사용
 - 멸균거즈 : 균을 없애는 처리를 한 후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은 거즈
 - 삼각건 : 팔을 고정하거나 붕대 오염을 방지하는 천
 - 생리대 :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위생용품

◇ 선택 구급(용)품 및 장비

- (장거리 걷기활동) 물집방지 패드 : 손, 발 등의 물집 예방 및 치료
- (장거리 걷기활동) 이온음료 : 땀을 많이 흘릴 경우 탈진과 근육경련 방지
- (수상활동) 자동제세동기 :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강한 전류로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한 후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기계

◇ 참여 청소년이 통증을 호소할 때 외상 등 다친 상처가 아니라 내과계통의 통증(두통, 복통 등)을 호소 경우 인근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후 전문 의료인의 처치를 따를 것을 권장 함

2) 작성예시

<작성예시>

■ (통합)공통6-D. 구급용품(장비) 보유현황

활동장소명	구분	품목
대한청소년수련원	필수	봉대, 압박봉대, 가위, 반창고, 열근거즈, 삼각건, 여성위생용품(생리대)
	선택	

■ (통합)공통6-E. 구급용품(장비) 준비계획

활동장소명	개별단위 프로그램명	의약품 및 장비내역
대한청소년수련원	오리엔테이션, 미션 오리엔티어링, 미션 오리엔티어링, 포레스트어드벤처, 팀머딩, 숲밧줄놀이, 숲밧줄놀이 프로그램 마무리, 숲밧줄놀이, 숲밧줄놀이, 미션 오리엔티어링, 미션 오리엔티어링	봉대, 압박봉대, 가위, 반창고, 열근거즈, 삼각건, 여성위생용품(생리대)

다. (통합)6-F, (통합)6-G, (통합)6-H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 사고대책과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위급상황 시를 대비하여 긴급구호체계를 확보하고 있고 참여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비대면방식의 경우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비상 시 역할분담, 사고 발생 시 통보 계획을 제시 한다.
- 대면방식의 경우 활동장 인근의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야간진료 가능) 등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과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의 특징에 따라 관련된 기관의 연락처가 구성되어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유선 연락처 제시(02-330-2800)
 - 활동장이 시, 군의 경계를 넘지 않을 시에는 활동장 지역 근교의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야간에도 진료가능)의 전화번호(비상연락망) 제시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연락처 추가 기재 가능(운영기관, 응급처치 담당자, 운영담당자, 안전전문인력 연락처 등)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비상연락망이 제시되어야 함
- 비상 시 대처를 위한 내부의 임무 및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 활동의 특징 및 내용, 참여인원에 맞추어 비상 시 역할분담이 제시되어야 함
- 비상 시 대처를 위한 내부의 임무 및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통보하고, 경미사고 발생 시 활동 운영 후 활동결과 보고에 기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함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 (통합)공통6-F. 비상연락망		
활동장소명	비상연락망	
대한청소년수련원	활동장소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충정로2가) 대한청소년수련원
	소방서	119
	경찰서	112
	응급의료기관	02-1234-567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 일정 중 숙박 포함 시 응급의료기관은 야간에도 진료가능한 곳이어야 함

〈작성예시〉

■ (통합)공통6-G. 비상 시 역할분담

구분	임무와 역할
운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 종말업무 수행 - 직권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신속한 상황보고 - 경찰소방의료 관계자와의 협조관계 유지 - 피해청소년에 대한 연락과 가정 방문 검토 및 지시 - 홍보 및 언론보도
(안전)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간호활동 및 필요시 응급처치 - 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유지 - 필요 시 환자 후송 및 긴급방송
보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말반에 각종 상황파악 및 전파(보고) - 피해시설 확인 및 자체조치 강화 -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 - 참여청소년 인원 확인

■ (통합)공통6-H.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

구분	사고발생	통보계획
중대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 (단, 전치 3주 미만의 경우는 경미사고로 확인) -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발생 	발생 즉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02-330-2800)유선 혹은 온라인 통보
경미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치 3주 미만의 치료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활동 운영 후 활동결과 보고 시 기재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6-F 비상연락망

활동장 소재지	비상연락망	
비대면활동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야간에도 진료가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통합)6-G 비상 시 역할분담

구분	임무 및 역할
운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 총괄업무 수행 - 직원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신속한 상황보고 - 경찰,소방,의료 관계자와의 협조관계 유지 - 피해청소년에 대한 연락과 가정 방문 검토 및 지시 - 홍보 및 언론보도
(안전)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간호활동 및 필요시 응급처치 - 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유지 - 필요 시 환자 후송 및 긴급방송
보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반에 각종 상황파악 및 전파(보고) - 피해시설 확인 및 자체조치 강화 -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 - 참여청소년 인원 확인

(통합)6-H 사고 발생 시 통보계획

구분	사고발생	통보계획
중대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 (단, 전치 3주 미만의 경우는 경미사고로 확인) -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발생 	발생 즉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으로 유선 혹은 온라인 통보
경미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치 3주 미만의 치료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활동 운영 후 활동결과 보고 시 기재

라. (통합)6-1 제37조의2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인증을 받은 자가 규정에서 정한 책임(제36조의2)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

⇒ 비대면방식으로 운영 시, 온라인 활동에 적합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인증받은 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인증수련활동 운영 시 인증 받은 사항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인증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활동실시 14일전 e청소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 이행여부 확인과 수시점검에 대한 협조
- 인증수련활동 실시 전 e청소년을 이용하여 14일전 실시 일자 통보
- 참여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겠음
- 활동 관련 법령 준수

○ 비대면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 있다.

- 활동 중 유사 시 및 비상상황(안전사고, 시스템 에러 등)에 대한 대응체계 숙지
- 활동콘텐츠 관리(참여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적합한 해상도 관리,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종료 후 삭제 등 관리)
- 인증수련활동 운영전반 모니터링 및 총괄 책임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용 준수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내용 준수
- 콘텐츠 제공 시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보안정책 확인

2) 작성예시

<작성예시>	
구분	인증받은 자의 책임 수행
인증수련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받은 사항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활동 중 유사 사시 및 비상상황(안전사고, 시스템 에러 등)에 대한 대응 체계 숙지 - 활동콘텐츠 관리(참여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적합한 해상도 관리,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종료 후 삭제 등 관리) - 인증수련활동 운영전반 모니터링 및 총괄 책임
사후관리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활동실시 14일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신청 하겠음 - 인증수련활동을 대상으로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또는 수시점검이 있을 경우 이행여부 확인과 수시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원의 요청에 응하겠음
실시일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련활동 실시 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14일전 실시일자를 통보하겠음
청소년에게 안전한 활동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련활동 운영 중 참여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겠음
관련 법령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겠음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용 준수(개인정보 보호 이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이해, 안전한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요령 등)
저작권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내용 준수(저작권 이해, 저작물 침해 예방 사례,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등)
보안 취약사항 등에 대한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공 시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보안정책 확인(보안성 취약 여부 등)

마. (통합)6-J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활동과정에서 참여청소년에게 생명·신체상의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활동이 진행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동과정 및 취침장소도 동일)
 - 모든 활동장소에 대한 인증신청기관의 명의로 된 보험증권 및 가입계획 확인
 - 보험증빙 서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하므로 증권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각 장별 전면 첨부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정일 경우 '보험가입계획' 클릭
(※공통기준 2번의 예산 산출내역에 보험 가입금액 제시)
- 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 금액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고당 금액이 참여청소년 수 대비 개인별 1인당 8,000만원 이상
(ex. 참여인원이 10명일 경우 사고당 금액은 8억원 이상)
 - 대물보장(참여 청소년의 물품 대상) 금액이 사고당 200만원 이상
- 비대면방식의 경우,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장소가 보장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컨소시엄형으로 신청한 활동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공동명의로 보험가입을 계획하여야 한다.
- **학단**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여부가 추가로 확인된다.
 - 숙박장소의 화재보험, 식사장소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6-J 보험가입 내역		
활동장소명	세부활동장	보험증빙서류
비대면 활동	비대면 활동	활동일에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 1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 이상 보험 가입

2

개별기준

1 (통합)개별기준1 숙박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개별 1-1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개별1-A
개별 1-2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개별1-B
특별 학단 3-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숙소가 관리되고 있다.	개별1-C 개별1-D

학단 : 학교단체 숙박형 유형에만 적용

가. (통합)개별 1-A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 참여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된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숙박공간 개요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 숙박공간(숙박장소, 숙박동, 객실)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 숙박장소(숙박동)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 숙박공간이 인당 법적기준인 2.4제곱미터가 확보되어 있다.
 - 2층 침대일 경우에는 수용정원으로 작성하며, 비고에 해당내용 작성
 - ※ 숙박장소가 활동장소와 다를 경우 (통합)공통5-C 확인요소에 숙박장소 안전·위생관리 서류가 증빙되어야 함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개별1-A 숙박공간						
숙박장소명	숙박동	사진	객실	1개 객실당 수용정원 혹은 크기	1개 객실당 숙박인원	비고
숙박장소명 기재	숙박장소에 있는 숙박동 기재	해당 숙박동의 외관 사진첨부	101호~110호	40㎡	4명	A동~D동의 구조 동일
			201호~205호	80㎡	10명	
			301호~308호	64㎡	8명	
숙박장소명 기재	숙박장소에 있는 숙박동 기재	해당 숙박동의 외관 사진첨부	행복실	80㎡	10명	

나. (통합)개별 1-B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 야간 생활 시 참여청소년의 안전 및 응급처치를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적절하게 역할이 배치되었는 지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취침부터 기상까지 시간대별로 야간 생활지도자 배치계획과 중점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숙소가 2개동(다른 건물) 이상일 경우 건물별 당직인원이 배정되어야 하며 취침부터 기상까지 모든 시간대별로 관리 필요 (다만, 단층으로된 숙소가 여러동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한명의 당직인원이 순회하며 관리하는 계획으로 같음 가능)
- 한 개 숙소 건물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 지도자가 배정되지 않아도 무방
- (통합)공통1-E의 일정표의 취침 및 기상시간과 야간 생활지도 시간이 동일해야 함



통합양식별 인증기준 작성

2) 작성양식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통합)개별1-B 숙박관리 지침

숙박장소명	시간	당직인원(명)	중점관리 사항

⇒ 당직 지도자 인원은 사용숙소에 따라서 변경 (1개동에 1인 배치)

⇒ 취침부터 기상까지 누락되는 시간대가 없도록 관리계획 수립

다. **학단 (통합)개별1-C, 학단 (통합)개별1-D**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숙소가 관리되고 있다.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필요한 숙소의 위생과 참여청소년별 침구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아래와 같은 숙소의 위생관리 사항 및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설관리(실내습도, 악취여부, 곰팡이 발생 여부, 먼지, 쾌적한 실내공기, 매월 1회 이상 객실 소독 여부)
- 침구류(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 여부, 수시로 일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소독 여부)
- 2명 이상이 점검한 90일 이내에 점검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1인당 1set씩 침구류를 제공할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단, 숙박장소가 텐트 등일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작성예시

<작성예시>

대한청소년수련원 숙박동 위생점검

점검일자 : 17.12.5.
 점검대상 : A동, B동

점검자	확인자
	

계	점검사항	확인
시설 관리	실내습도는 잘 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까?	
	곰팡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내공기가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매월 1회 이상 객실을 소독하고 있습니까?	
침구류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일광 그 밖에 방법에 따라 소독하고 있습니까?	

2 (통합)개별기준2 숙박 안전관리 인력확보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개별 2-1 참여청소년의 숙박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2-A

가. (통합)개별 2-A 참여청소년의 숙박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숙박장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관리가 계획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숙박장소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정보를(위탁업체명, 위탁계약기간 등) 확인 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건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내용(법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 자격관련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증빙하지 않아도 무방 (다만, 이행심사 시 해당 내용을 확인으로 반드시 계획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함)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개별2-A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사항			
숙박장소명	자격사항	재직사항	비고
대한청소년수련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재직	

- ⇒소방안전관리자가 재직하고 있을 경우, 위 표만 작성하고 실제 유자격자의 재직(선임) 증명은 추후 활동 현장에서 확인함
- ⇒소방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 첨부
- ⇒숙박장소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닐 경우 관련 근거(공문, 관련서류 등) 첨부

3 (통합)개별기준3 영양관리자 자격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개별 3-1 영양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형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될 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국내에서 진행될 시에는 증빙)	개별3-A
개별 3-2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식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국제형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될 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국내에서 진행될 시에는 증빙)	개별3-B
학단 특별 3-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식단이 관리되고 있다.	개별3-C

학단 : 학교단체 숙박형 유형에만 적용

가. (통합)개별3-A 영양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사와 간식이 참여청소년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도록 마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식사제공 장소별 관련법령에 따른 영양사 재직여부 혹은 영양관리 확인서를 확인 가능하다.
 - 영양사에 의한 영양관리의 경우 : 영양사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영양사가 해당 기관에 미재직시에는 영양사 자격증과 식단확인증 증빙)

- 외부 업체를 통한 영양관리(식당)의 경우 :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라는 증빙서류(영업신고증)
 - 청소년이 식재료를 지참하여 조리할 경우 : 1일 권장 섭취량에 따른 식단표, 권장 식자재 및 식자재 관리계획 작성
- 참여 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필요 에너지량이 적합하다.
- ※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고, 100명이상에게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재직하고 있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관련)
 - ※ 식당 위탁 시에는 해당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증빙 필요
(위탁계약서, 신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함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

2) 작성예시

- ※ 위생관리 계획과 통합하여 등록((통합) 개별3-B 참조)

나. (통합)개별 3-B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활동장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식당위생관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모두 확인된다.

- 영양사에 의한 영양관리의 경우 : 영양사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영양사가 해당 기관에 미재직시에는 90일 이내에 점검한 식당 위생점검표* 증빙)
* 식당 위생점검표는 양식은 자유이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 냉장, 냉동 제품의 보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조리실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청결관리 여부
 -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외부 업체를 통한 영양관리(식당)의 경우 :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라는 증빙서류(영업신고증)
 - 외부 업체를 통한 영양관리를 하지만 식사장소가 상이할 경우 :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라는 증빙서류(영업신고증), 식사 지도방법 작성
 - 청소년이 식재료를 지참하여 조리할 경우 : 권장 식자재 및 식자재 관리계획 작성
 - 청소년이 도시락을 지참하여 올 경우 : 식사 지도방법 작성
- ※ 야외에서 직접 취사할 경우 위생점검 서류는 식사 방법 등 제시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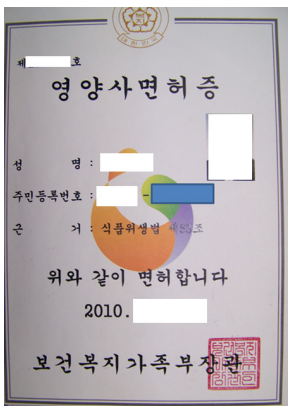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증빙서류 한 번에 보기

구분	증빙서류	
	영양관리	위생관리
1-1. 식사장소에 영양사가 재직 중일 경우	영양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2. 식사장소에 영양사가 재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양사 자격증, 식단확인증	식당 위생점검표
2-1. 외부 업체를 통한 영양관리(식당)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라는 증빙서류(영업신고증)	
2-2. 외부업체를 통한 영양관리를 하지만 식사장소가 상이할 경우(도시락 업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라는 증빙서류(영업신고증)	식사 지도방법 작성
3-1. 식재료를 개인이 지참하는 경우	1일 권장 섭취량에 따른 식단표	권장 식자재 및 식자재 관리계획 작성
3-2. 청소년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	식사 지도방법 작성	

2) 작성예시

<작성예시>

○ 식사장소에 영양사가 재직 중일 경우

영양관리 증빙서류	위생관리 증빙서류																																
 <p>영양사면허증</p> <p>성명: []</p> <p>주민등록번호: []</p> <p>주소: []</p> <p>2010. []</p> <p>보건복지가족부장관</p>	<p>(다이어트활동) 식단 확인</p> <p><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개요</p> <p>○ 프로그램명 : 다이어트 활동</p> <p>○ 참여대상(연령대) : 초중학생 (12세~13세)</p> <p>○ 인 원 : 40명</p> <p><input type="checkbox"/> 식단</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차</th> <th>식사양식</th> <th>주분</th> <th>식단</th> <th>열량</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조식</td> <td>원. 탄질로. 콩나물무침~</td> <td>600</td> <td></td> </tr> <tr> <td>2</td> <td>점심</td> <td>황금치마늘. 닭. 민계떡볶이~</td> <td>1400</td> <td></td> </tr> <tr> <td>3</td> <td>석식</td> <td>~</td> <td>600</td> <td></td> </tr> </tbody> </table> <p>본인은 (다이어트 활동)의 식단 및 열량이 대상 청소년의 연령에 맞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2014년 11월 11일</p> <p>영양사: 변아름 번호: 111111111</p> <p>영양사: 홍길동</p> <p>대한청소년수련관장 귀하</p>	일차	식사양식	주분	식단	열량	1	조식	원. 탄질로. 콩나물무침~	600		2	점심	황금치마늘. 닭. 민계떡볶이~	1400		3	석식	~	600													
일차	식사양식	주분	식단	열량																													
1	조식	원. 탄질로. 콩나물무침~	600																														
2	점심	황금치마늘. 닭. 민계떡볶이~	1400																														
3	석식	~	600																														
	<p>식당 위생점검표</p> <p><input type="checkbox"/> 관리대상</p> <p><input type="checkbox"/> 점검일시: (년),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점검차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검내용</th> <th>점검결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유류기관 관리대상 원료 사용여부</td> <td></td> <td></td> </tr> <tr> <td>2</td> <td>냉장, 냉동 제품의 보관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td> <td></td> <td></td> </tr> <tr> <td>3</td> <td>조리실 및 조리간판에 대한 청결 관리 여부</td> <td></td> <td></td> </tr> <tr> <td>4</td> <td>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 실시 여부</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유류기관 관리대상 원료 사용여부			2	냉장, 냉동 제품의 보관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			3	조리실 및 조리간판에 대한 청결 관리 여부			4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 실시 여부			-	-	-	-	-	-	-	-	-	-	-	-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유류기관 관리대상 원료 사용여부																																
2	냉장, 냉동 제품의 보관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																																
3	조리실 및 조리간판에 대한 청결 관리 여부																																
4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 실시 여부																																
-	-	-	-																														
-	-	-	-																														
-	-	-	-																														

○ 외부 식당 이용의 경우(식당)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증빙서류



○ 외부업체를 통한 영양관리를 하지만 식사장소가 상이할 경우(도시락 업체)

영양관리 증빙서류



위생관리 증빙서류

- 식사장소 : 대한청소년수련관 강의실
- 위생관리계획
 - 사전답사 시 식사장소의 청결상태 미리 확인
 - 식사 예약 시 식사제공업체에 청결사항 확인
- 식사 지도방법
 - 당일 식사시간 전 참가자 위생교육 실시
 - 식사 전 깨끗하게 손씻기 안내 실시
 - 식사하면서 음식으로 장난하지 않도록 지도

○ 식재료를 개인이 지참하는 경우

영양관리 증빙서류	위생관리 작성예시																									
<p>식 단 표</p>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2일차 식의</td> </tr> <tr> <td>식단표</td> <td> 흑미밥 된장찌개 아재비빔밥 재료 (시금치, 가지, 당근, 콩나물 등) 달걀후라이 고추장 785kcal </td> </tr> </table> <p>※ 연평대별 1일 권장섭취량 준수(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영양학회)</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별</th> <th>연령</th> <th>필요 에너지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남자</td> <td>9-11</td> <td>1,900</td> </tr> <tr> <td>12-14</td> <td>2,400</td> </tr> <tr> <td>15-18</td> <td>2,700</td> </tr> <tr> <td>19-29</td> <td>2,600</td> </tr> <tr> <td rowspan="4">여자</td> <td>9-11</td> <td>1,700</td> </tr> <tr> <td>12-14</td> <td>2,000</td> </tr> <tr> <td>15-18</td> <td>2,000</td> </tr> <tr> <td>19-29</td> <td>2,100</td> </tr> </tbody> </table>	구분	2일차 식의	식단표	흑미밥 된장찌개 아재비빔밥 재료 (시금치, 가지, 당근, 콩나물 등) 달걀후라이 고추장 785kcal	성별	연령	필요 에너지량	남자	9-11	1,900	12-14	2,400	15-18	2,700	19-29	2,600	여자	9-11	1,700	12-14	2,000	15-18	2,000	19-29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식자재 : 쌀, 흑미, 김치, 두부, 달걀, 시금치, 가지, 당근, 호박, 양파, 고추장, 된장, 감자 - 식자재 관리 계획 : 냉장고에 보관 후 제공
구분	2일차 식의																									
식단표	흑미밥 된장찌개 아재비빔밥 재료 (시금치, 가지, 당근, 콩나물 등) 달걀후라이 고추장 785kcal																									
성별	연령	필요 에너지량																								
남자	9-11	1,900																								
	12-14	2,400																								
	15-18	2,700																								
	19-29	2,600																								
여자	9-11	1,700																								
	12-14	2,000																								
	15-18	2,000																								
	19-29	2,100																								

○ 청소년이 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작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장소 : 대한청소년수련관 강의실 ○ 위생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답사 시 식사장소의 청결상태 미리 확인 - 식사 예약 시 식사제공업체에 청결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지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식사시간 전 참가자 위생교육 실시 - 식사 전 깨끗하게 손씻기 안내 실시 - 식사하면서 음식으로 장난하지 않도록 지도

다. **학단 (통합)개별 3-C**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식단이 관리되고 있다.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한 식단을 제공할 계획을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식단은 1식 1국 4찬을 제공한다.

- 단,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식사시간이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시 : 기아체험 등)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개별 3-C 식단제공 계획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신청 시 작성

- 식단은 1식에 1국 4찬을 제공하며 참여청소년의 기호에 맞추어 제공한다.

※ 단,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해 식사시간이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위의 계획은 필수로 제시되어야 함

4 (통합)개별기준4 이동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개별 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 (단,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	개별 4-A 개별 4-B 개별 4-C
국제 개별 4-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 * 국제형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될 시 이동계획 및 이동수단 명시	개별 4-A 개별 4-B 개별 4-C

가. (통합)개별 4-A, (통합)개별 4-B, (통합)개별 4-C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 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

1) 확인요소

- 이동방법, 출발지, 도착지, 이동거리 등을 확인 가능하다.
 -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시
 - 이동경로는 지도에 따른 주요장소를 경로에 따라 작성
 - 청소년의 연령, 특성, 활동지역의 특성,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이동거리 및 경로 계획
 - 도로의 종류는 차량도로, 인도, 산길(등산로), 자전거 전용도로, 해안도로 등으로 구분
 - 차량도로에는 반드시 이동관리 차량 확보 문서 제시(자동차 등록증 등)
- 이동관리를 위한 차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동장소가 시가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 거리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증빙하지 않아도 무방)
 - ※ 차량관련 필요유무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 이동수단(도보, 자전거 등)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등이 기술 된 이동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 활동장 특징 및 내용, 참여인원에 맞추어 이동관련 지침 제시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개별 4-A 이동개요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시되어야 함

일차	단위 프로그램명	이동 방법	도로 종류	이동경로		이동 거리
1일차	모험 대장경 I	도보	인도, 차량 도로	지도		14km
				주요 장소	고석정 → 창동로 → 호국로 → 김화읍	
2일차	모험 대장경II	자전거	자전거 도로	지도		28km
				주요 장소	철원충렬사지 → 생창길 → 영서로 → 노동초등학교	

⇒도로의 종류는 차량도로, 인도, 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해안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함

(통합)개별 4-B 이동관리 차량 배치 및 확보

일차	차량등록증	
	주요장소	

⇒차량등록증의 검사가 인증신청 시점에서 유효한지 확인 후 증빙(*검사 유효기간)

(통합)개별 4-C 이동관리 지침

- 도로의 도보 방법은 차량이 운행하는 방향으로 1열로 실시한다.
- 후송차량은 항상 안전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대열의 중간지점에서 운행한다.

.....

⇒상기의 내용은 예시이며 활동의 특징 및 내용, 참여인원에 맞추어 이동관련 지침이 제시되어야 함

5 (통합) 개별기준5 휴식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개별 5-1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	개별5-A
국제 개별 5-1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관리 계획이 있다. * 국제형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될 시 해외주관 프로그램이라면 탄력적으로 적용	개별5-A

가. (통합)개별 5-A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1) 확인요소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계획과 휴식시간 운영계획 확인이 가능하다.
 -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시
 - 이동 구간 별 이동거리에 따른 휴식계획 수립
 - 중요 확인사항에는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과 관련된 지침 및 건강관련 확인사항 내용 제시
- 일자별 휴식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참여자 및 지도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계획과 휴식시간 운영 계획 확인 가능

- 이동 진행 시기(회기 또는 일자) 작성
- 이동 중 소요시간별 휴식계획 수립
-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중요확인사항 기입

2) 작성예시

〈작성예시〉				
(통합)개별 5-A 휴식관리				
⇒기본형 활동의 경우에도 이동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시되어야 함				
〈활동일자별 휴식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차	이동구간	이동거리	휴식장소	참여청소년과 지도자 휴식·건강관리
〈활동특성에 따라 휴식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차	이동구간	이동거리	휴식계획	참여청소년과 지도자 휴식·건강관리
1회기	여의도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7km (1시간 45분)	30분 도보이동, 5분 휴식	- 인원파악 - 전신 스트레칭 및 음료 섭취 - 휴식 및 참가자 건강 확인
2회기
※ 참여자 및 지도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계획과 휴식시간 운영 계획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특별기준

1 (통합)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 전문지도자 배치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위험도 1-1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9-2]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공동1-F

가. (통합)특별 **위험도 1-A**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인증제 운영규정의 배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갖추고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1) 확인요소

- 지도자는 공통기준 1번에 증빙되어 있는 모든 단위프로그램별로 배치규정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
 - ※ 지도자 : 운영담당자, 전문지도자, 보조지도자, (안전)전문인력
 - 위험도가 높은 활동 : 운영규정에 따라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배치 (대기인원과 직접활동 인원을 나누어 배치)
 - * 일반 활동 : 운영규정에 따라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배치
 - ※ 반드시 지도자 배치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프로그램 운영형태가 분반 또는 교차운영일 경우 활동장소별 지도자 배치 기준 준수
 - ※ (안전)전문인력은 프로그램별로 배치되지 않아도 무방(단,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상주)

2) 작성예시 및 시스템 등록방법

- ※ 단위프로그램 내용과 통합하여 등록((통합)공동1-F참조)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전문지도자 전문성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과정 참여 (청소년:지도자)	사전교육· 교육대기	지도자 전문성 수준
수상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중형 체험활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2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단, 인명구조요원 1명이상 포함
	내수면의 수상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수상활동을 하는 경우	1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수상활동	내수면의 래프팅 활동	래프팅 보트당 1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갖춘 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활동	2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유자격자 배치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4시간 이상 야간산행	15:1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3년 이상 해당 활동 지도 경력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해당 분야 유자격자 배치 ※ 항공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지도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장거리 걷기 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1:1		

2 (통합)특별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위험도 2-1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특별 위험도 2-A
특별 위험도 2-2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되고 있다.	특별 위험도 2-B 특별 위험도 2-C
특별 위험도 2-3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특별 위험도 2-D

가. (통합)특별 **위험도** 2-A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 가능하다.

⇒ 인증신청자가 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인증신청자가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지 법적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인증신청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의 법인명이 동일하여야 함)
 - 수상활동 : 수상레저사업법 혹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 · 허가 받은 증서
 - 항공활동 : 항공법(제140조의2) 혹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 · 허가 받은 증서
 - 장거리 걷기활동 :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 · 허가 받은 증서
 - 산악활동 :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 · 허가 받은 증서
 - 기타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 : 관련법에 근거하여 인 · 허가 받은 증서
-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 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필요
 - 예) 야영장 :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야영장) 운영에 따른 인 허가 받은 증서

2) 작성예시 및 양식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받은 증빙의 경우 예시〉	〈작성양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본문 제외됨) (알 목)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번호 제 13 호</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증</td> </tr> <tr> <td>① 상 호(명 칭)</td> <td colspan="3"></td> </tr> <tr> <td>② 상 영(대표자)</td> <td>③ 주 연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④ 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⑤ 사업장의 위치</td> <td colspan="3"></td> </tr> <tr> <td>⑥ 영 업 구 역</td> <td colspan="3"></td> </tr> <tr> <td>⑦ 수 상 레 저 기 구 일 세</td> <td colspan="3"></td> </tr> <tr> <td>⑧ 사 업 기 간</td> <td>⑨ 영 업 시 간</td> <td colspan="2">⑩ 실 출 간 30분 ~ 실 입 후 30분</td> </tr> <tr> <td>⑪ 표 기</td> <td>⑫ 종 사 자 및 안전요원</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7월 18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 </p>	등록번호 제 13 호	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증			① 상 호(명 칭)				② 상 영(대표자)	③ 주 연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업장의 위치				⑥ 영 업 구 역				⑦ 수 상 레 저 기 구 일 세				⑧ 사 업 기 간	⑨ 영 업 시 간	⑩ 실 출 간 30분 ~ 실 입 후 30분		⑪ 표 기	⑫ 종 사 자 및 안전요원			<p>(통합)특별 2-A 활동운영 법적근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4a460;"> <th style="width: 50%;">단위프로그램명</th> <th style="width: 50%;">법적근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50px;"></td> <td style="height: 150px;"></td> </tr> </tbody> </table>	단위프로그램명	법적근거		
등록번호 제 13 호	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증																																								
① 상 호(명 칭)																																									
② 상 영(대표자)	③ 주 연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업장의 위치																																									
⑥ 영 업 구 역																																									
⑦ 수 상 레 저 기 구 일 세																																									
⑧ 사 업 기 간	⑨ 영 업 시 간	⑩ 실 출 간 30분 ~ 실 입 후 30분																																							
⑪ 표 기	⑫ 종 사 자 및 안전요원																																								
단위프로그램명	법적근거																																								

나. (통합)특별 위험도 2-B, (통합)특별 위험도 2-C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공간과 장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 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활동공간과 장비의 유지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활동장이 안전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점검결과 증빙
 - ※ 자체점검일 경우 2인 이상이 결재한 자료 증빙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배포한 안전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항공, 장거리도보, 산악, ATV의 경우 1년 이내 점검주기 설정 가능

〈예시〉

- 수상활동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항공활동 : 활동장 안전점검표(활동장 주변에 장애물 여부 등)
- 장거리 걷기활동 : 숙영지(세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 전기 혹은 불빛 사용 가능)
- 산악활동 : 낙석위험 여부, 안전로프와 나무계단 등의 상태, 이정표나 안내판 여부, 입산 통제구역, 장애물 여부(산악스키)
- ATV : 주변에 위험요소, 절벽이나 낙석 등의 위험요소
- 집라인 : 와이어 로프, 기둥, 와이어 설치 적절성, 와이어 교체주기, 플랫폼 점검, 가이, 브레이크 시스템

○ 활동장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점검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점검결과 증빙

※ 자체점검일 경우 2인 이상이 결재한 자료 증빙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배포한 안전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점검주기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제시

-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활동장비 점검표도 필요에 따라 제시

예) 고카트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사설물에 해당 되는지 확인 및 그에 준하는 점검 필요

<예시>

- 수상활동(수상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활동) : 수상활동 기구, 구명조끼, 헬멧, 구명줄, 구명환, 자동제세동기, 비상구조선
- 수중활동(스킨스쿠버 등 수중에서 활동) : 수경, 오리발, 잠수복, 장갑, 산소통 장비 일체, 자동제세동기
- 항공활동 : 기체, 하네스, 헬멧, 보조 낙하산, 비행계기, 마운트, 고글, 장갑 등
- 장거리 도보 : 우비, 물통, 야광복과 랜턴(야간이동 시)
- 산악활동
 - * 산악스키 : 헬멧, 장갑, 스키부츠, 산악용 스키, 스틱, 썰, 고글
 - * 클라이밍 : 헬멧, 장갑, 확보기, 하네스, 자일, 암벽화
 - * 야간등산 : 장갑, 후레쉬, 스페츠, 아이젠(겨울)
- ATV : 헬멧, 보호대
- 집라인 : 트롤리, 안전벨트, 카라비너, 랜야드, 안전모

※ 활동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2) 작성양식

<작성양식>

(통합)특별 위험도 2-B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 유지·관리

단위프로그램명	활동장 점검	점검주기

※ 단, 수상활동은 점용허가증의 허가기간으로 같음 가능

※ 집라인활동은 2018년 이후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결과서로 증빙

⇒활동장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필수 점검항목은 매뉴얼 참고)

(통합)특별 위험도 2-C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비 유지·관리

단위프로그램명	활동장비	점검주기

※ 집라인활동은 2018년 이후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결과서로 증빙

⇒활동장비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최소 점검항목은 매뉴얼 참고)

다. (통합)특별 위험도 2-D 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활동 시 안전대책을 확인 가능하다.

⇒ 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운영 시의 안전대책 수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

1) 확인요소

○ 활동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활동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활동의 특징과 내용에 맞게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배포한 안전체크리스트의 교육내용 및 대처방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작성양식

<작성양식>
(통합)특별 위험도 2-D 활동 안전대책
- 활동 시 안전대책과 내용을 기술

3 (통합)특별기준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학단 1-1 중요프로그램(규칙 제15조8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외한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1-E
특별 학단 1-2 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된 사고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기관에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6-J
특별 학단 1-3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에 적합하도록 숙소가 관리되고 있다	개별1-C 개별1-D 개별3-C

※ 본 기준은 각 통합양식에서 작성함(각 통합양식 참조)

4 (통합)특별기준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실시간 1-1 실시간 쌍방향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 비대면 1-A
특별 실시간 1-2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서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공통 1-D
특별 실시간 1-3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	공통 6-I
특별 실시간 1-4 실시간 쌍방향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1-F
특별 실시간 1-5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6-I

※ 본 기준은 각 통합양식에서 작성함(각 통합양식 참조)

5 (통합)특별기준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콘텐츠 1-1 콘텐츠 제작물 또는 확보계획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비대면 1-A
특별 콘텐츠 1-2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공통 1-D
특별 콘텐츠 1-3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한 윤리성, 저작권, 무결성, 콘텐츠 설계 및 구성, 콘텐츠 내용, 접근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 비대면 1-B
특별 콘텐츠 1-4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사용된 콘텐츠의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공통 6-I
특별 콘텐츠 1-5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1-F
특별 콘텐츠 1-6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6-I

※ 본 기준은 통합양식에서 작성함(통합양식 참조)

6 (통합)특별기준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인증 확인요소	통합양식
특별 과제 1-1 과제수행 중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 비대면 1-A
특별 과제 1-2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내용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공통 1-D
특별 과제 1-3 과제수행 중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1-F
특별 과제 1-4 과제수행 중심 활동에 적합한 참가자 확인 수단 또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1-F
특별 과제 1-5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시 보안사항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6-1

※ 본 기준은 통합양식에서 작성함(통합양식 참조)

가. (통합)특별 비대면 1-A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1) 확인요소

-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수행 중심 활동이 운영되는 플랫폼을 확인 할 수 있다.
-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의 경우 콘텐츠의 확보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2) 작성예시 및 양식

<작성예시>
<p>(통합)특별 비대면 1-A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 실시간 쌍방향 ○ 활용 플랫폼 : ZOOM ○ 콘텐츠 확보계획 : 실시간 쌍방향 활동이므로 해당 없음
<양식_한글파일로 작성>
<p>(통합)특별 비대면 1-A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 ○ 활용 플랫폼 : ○ 콘텐츠 확보계획 :

나. (통합)특별 비대면 1-B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한 윤리성, 저작권, 무결성, 콘텐츠 설계 및 구성, 콘텐츠 내용, 접근성의 준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1) 확인요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관리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콘텐츠의 품질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윤리성	<p><사회적 가치관> 콘텐츠의 내용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국가, 민족, 문화, 인물, 장애, 상품, 단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 및 윤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이 들어있지 않은가 -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여부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윤리성	<p><선정성/폭력성> 콘텐츠의 내용에 선정적 또는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한다.</p>	- 선정적, 폭력적인 용어, 이미지, 자료 등이 제고되고 있는지 여부
	<p><개인정보보호> 콘텐츠 내용에서 개인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있는지 검토 - 특정 정보로 인해 상업적으로 간접 광고가 되지 않도록 함
저작권	<p><저작물 확보> 저자의 저작권을 명시하고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자료는 무단 인용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저작물 확보 여부 - 저작권의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
	<p><초상권> 특정인의 모습이 그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작, 공표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p>	-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가(초상권 사용 동의서 확보 등)
	<p><저작물 이용권> 개발 기관 및 통합권리 대상 콘텐츠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용 콘텐츠가 이용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된 저작물이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 유튜브의 영상을 활용할 경우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p><저작권 표시> * 콘텐츠 제작시 적용 교육용 콘텐츠 이용 범위 등에 적합한 저작권 표시를 제시한다.</p>	- 개발된 콘텐츠는 국제저작권표시방법 CCL 또는 공공누리 표기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무결성	<p><기능 및 동작> 콘텐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 무결성을 확보한다.</p>	- 콘텐츠 기능(메뉴, 화면이동 등)이 오류 없이 동작하는가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무결성	<p><구성 요소> 콘텐츠 내 제공되는 동영상, 오디오의 학습 효과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확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영상 내 판서 내용 가독성, 화면크기 조절, 화질 등)과 오디오 품질 수준(소리크기, 잡음 등)이 일관되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p><콘텐츠 오류>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표현상의 오류를 파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내용의 표현상(용어 설명, 맞춤법, 외래어 표기, 오·탈자 등)의 오류는 없는가
콘텐츠 설계 및 구성	<p><목표 제시> 지식, 기술, 태도 등 학습 후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성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제시되어 있는가 - 한 시간(차시)의 학습 목표가 행동적 용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p><교수학습전략>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선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달성 및 매체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p><동기부여>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참여기법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유도하는데 적합한 구체적인 내용, 활동(보상을 통한 참여 독려 등)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p><멀티미디어> 학습자와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여 활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p><인터페이스> 학습 진행이 용이하도록 화면과 구성요소 등의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이고 일괄성 있게 구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구성이 일관적이고 2화로우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아이콘, 메뉴, 버튼, 배경 등)가 사용이 편리한가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콘텐츠 내용	<p><사용자 편의성>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속도, 순서 등을 통제할 수 있는가(진단, 형성, 수행평가 등)
	<p><상호작용>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교수자, 학습자 등 다양한 대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내 또는 콘텐츠 외 기능으로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p><주의집중>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주도 콘텐츠일 경우 단조롭지 않은 억양, 다양한 제스처 등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가
	<p><내용 선정> 학습자의 특성, 사전 지식과 경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되었는지 여부 -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학습 내용이 선정 및 조직되었는지 여부
	<p><학습 분량> 학습 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으로 콘텐츠를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콘텐츠 내용이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p><최신성> 최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및 자료(사진, 통계, 도표, 지도, 지명, 각종 용어, 법령, 동영상 및 각종 인용 자료)는 최신의 정보(개발 시점 2년 이내)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가
	<p><정확성> 학습 내용은 신뢰할만한 참고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내용에서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통설화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콘텐츠 내용	<p><가독성> 학습 내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학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도표,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시한다.</p>	- 콘텐츠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폰트, 색깔, 줄, 간격, 도표, 사진 및 동영상의 해상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p><학습자료> 학습에 필요하거나 강의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p>	-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본자료 또는 보충/심화자료 등)는 오류 없이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
	<p><평가내용 선정> 학습 목표를 달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의 내용을 선정하고 난이도와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을 구성한다.</p>	- 평가내용이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가
	<p><평가방법 선정> 학습자의 학습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전, 중, 후의 진행에 따라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p>	- 각 차시별 콘텐츠 내에 진단, 형성, 수행 평가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학습 진행을 돕고 있는가
	<p><평가 도구 적용>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의 평가 도구를 적용하는 것</p>	- 학습 목표 및 진행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 도구(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차시내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p><평가 결과 제공>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개선하고 향후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오답과 평가 문항과 관련된 학습 내용에 대한 해설 등을 제시하는 것</p>	- 평가 문항의 내용, 정·오답, 해설에 대해 오류 없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평가 결과가 연수자에게 제시되고 있는가

구분	구성요소 설명	세부내용
접근성	<p><웹 접근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육용 콘텐츠에 접근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웹콘텐츠의 경우 두 가지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구동이 가능한가
	<p><기기 접근성> 하나의 교육 콘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에서도 구동이 가능한가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이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중지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중지' 상태가 되는 것

인증제 운영규정 제43조의2

인증수련활동의 중지

- ▷ 신청조건 : 유효기간 내 1회만 신청가능,
최대 1년까지 중지기간 설정가능
- ▷ 중지기간 : 중지신청일 기준 45일
이후부터 중지가능
* 유효기간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인증제 운영규정 제43조의3

중지 인증수련활동의 재개

- ▷ 재개조건 : 중지기간 만료후 자동 재개
* 유효기간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운영 대상 유지중인 인증수련활동 중 중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제출 방법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서 또는 재개통보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yapyouth@kywa.or.kr)

※ e청소년(www.youth.go.kr) 업무지원서비스 ▶ 수련활동인증 ▶ 게시판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중지신청 일정 중지를 요청하는 날짜의 45일 전

결과 발표 일정 각 회차 인증신청 심의결과 공고일

문의 02-330-2800(내선 2, 활동인증부) / yapyouth@kywa.or.kr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신청 매뉴얼

발간등록관리번호 : KYWA-2020-054-01

발행 2020년 9월

발행인 이광호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인쇄처 모든커뮤니케이션
1670-8624